

제406회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3년5월16일(화)

장 소 정무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8)
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6)
3.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2)
4.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3)
5.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6)
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1)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81)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3)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644)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7)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3)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2)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4)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0)
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4)
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4)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4)
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8)
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2)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6)
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1)
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7)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7)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8)
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1)
2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2)
2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7)
2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4)
2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7)
3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4)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5)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
33.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0)

3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0)
3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3)
3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
3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
3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
3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
4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중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3)
4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
4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
4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6)
4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3)
4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5)
4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9)
4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5)
4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0)
4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0)
5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
5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
5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8)
5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
5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
5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
5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1)
5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2)
5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5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6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6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6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6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6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6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
6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
6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0)
6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0)
7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7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상정된 안건

1.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8) 6
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6) 6
3.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2) 6
4.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3) 6

5.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6)	6
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1)	6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81)	6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3)	6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644)	6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7)	6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3)	6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2)	6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4)	6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0)	6
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4)	6
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4)	6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4)	6
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8)	6
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2)	6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6)	6
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1)	6
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7)	6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7)	6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8)	6
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1)	46
2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2)	46
2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7)	46
2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4)	46
2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7)	46
3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4)	46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웅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5)	46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	46
33.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0)	46
3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0)	46
3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3)	46
3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	46
3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	46
3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	46
3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	46
4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3)	46
4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	46
4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	46
4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6)	46
4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3)	46
4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5)	46
4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9)	46
4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5)	46
4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0)	46

4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0)	46
5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	46
5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	46
5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8) ...	47
5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 ...	47
5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 ...	47
5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	47
5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1) ...	47
5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2) ...	47
5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1)	47
5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0)	47
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1)	47
6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9)	47
6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4)	47
6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4)	47
6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4)	47
6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17)	47
6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6)	47
6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24)	47
6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0)	47
6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10)	47
7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47
7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47

(10시26분 개의)

○소위원장 김종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가보훈처 소관 24건의 법률안, 금융위원회 소관 47건의 법률안 등 총 71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해도 됩니까?

○소위원장 김종민 하세요.

○박용진 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법안심사

소위에 앞서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고 말씀드린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 차례 서로 일별 정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물었더니 국회의 의견을 따르겠고 이 법의 개정 취지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도 들었고, 윤한홍 간사님께서도 금융위가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지적도 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 나서 벌써 두 달 세 달이 지나버렸는데요 제가 요청드리는 사항은 이 법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의 강행 처리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법안과 관련해서, 뭐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것이 현재 경제 상황과 또 개별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가라고 하는 우려들은 있으신데 그것이 어떤 우려일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리고 우리 위원들끼리만의 논쟁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오셔서 어떤 것이 우려되고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정도는 듣고 우리가 더 계속 논의·심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여러 차례 제가 개별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너무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찬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시장의 견해를 정확하게 듣는 것으로 국회가 적어도 한 걸음 정도, 반보 정도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함께 의논해 주시고 양당 간사께서 깊이 의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 정도는 한번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같이 법안을 발의한 입장이기는 하지만 특히 시장에서 ‘자본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삼성생명이 부담스럽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있어 가지고 시장 관계자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관계자도 직접 불러서 본인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정책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또 실제로 삼성생명은 우리나라 굉장히 중요한 회사이고 경제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점검하는 것 자체는 일단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박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은 채 선협적으로 ‘안 된다’ ‘된다’ 그리고 하지 않는 것은 국회로서의 임무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이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 양당 간사 간에도 논의를 좀 해 왔던 문제니까 토론을 해 보자는 것을 계속 반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 법안1소위가 주최해서 하든지 아니면 전체회의 차원에서 하든지 일단 공청회 방식에 대한 여야 간에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김희곤 위원님.

○김희곤 위원 아까 잠깐 논의했던 건데 가상자산 관련해서요 우리 정무위가 가상자산법을 새로 제정하고 있는데 주무 당사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정해서 통과를 시켜 놔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인 게이트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참에 우

리 정무위만이라도, 아주 투명하고 선명성을 보이기 위해서 정무위 차원에서 결의를, 가상자산 전수조사 또는 뭐라고 그러니까……

○소위원장 김종민 자진신고.

○김희곤 위원 예, 자진신고.

일단 우리 정무위가 주도적으로 먼저 한번 결의를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정무위안으로 올려서 되든지 그것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아까 우리 회의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보통 우리 국회법상 결의안으로 채택을 하려면 일단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본회의에 상정이 돼요.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결정에 따라서 집행을 국회에서, 그 결의안 내용에 윤리위원회에서 한다면 명시를 하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김희곤 위원님하고 이용우 위원님이 전수조사와 자진신고 결의안 초안을 한번 마련해서 내일 우리 전체회의 때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 위원장님, 공감하고요. 그러면 아예 우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물론 법안을 주로 다뤄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혹은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발표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토론, 말씀하신 대로 소위든 전체회의든 토론 정도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가상자산과 관련된 우리 정무위원 전체의 자진신고 이런 형식에 대해서 협의해서 발표하기로 했다고 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 간단하게 끝나고 브리핑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유의동 위원 그것을 거기다 거냐, 그래. 김남국 사건하고 그것하고 동급이야?

○윤주경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상자산……

○유의동 위원 아니, 이게 김남국 사건하고 어떻게 동급이 됩니까?

○소위원장 김종민 아니, 잠깐만요.

박용진 위원님, 보험업법 공청회는 그냥 양당 간사가 책임지고 협의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이 가상자산 관련된 문제만 정확하게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것은 협의해서 늦지 않게 정리할게요. 그것은 믿고 한번 맡겨 주시고, 일단은 메시지를 발표하거나 할 사안보다는 우리가

협의할 사안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전수조사나 자진신고 관련된 내용은 약간 전문적인 그런 검토 내용도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가상자산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프로세스와 포인트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법상의 어떤 절차를 거쳐야 이게 성립이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상의해서 내일 전체회의 때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처 윤종진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발언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8)
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6)
3.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2)
4.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3)
5.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6)
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1)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81)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3)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644)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7)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4653)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2)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4)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0)
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4)
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4)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4)
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8)
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2)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6)
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1)
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7)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7)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28)

(10시35분)

○소위원장 김종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2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현 소위자료 1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의 차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추가로 유공자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법률 제정의 선결 요건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에 대한 구체적 특징과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채용시험의 가점 부여, 주택 우선공급 등은 청년들의 입장에서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 개정안과 관련 발의 의원,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법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취업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은 향후 논의를 통해 정리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건에 대한 평가가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이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희생·공헌한 사람을 희생·공헌자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가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국가보훈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안에서 포섭하는 것이 국가의 법 집행 및 행정 운영상 효율적이며 구체적 지원 방안을 떨어낼 경우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씀과 개정안의 법 적용 대상자는 921명으로 특정돼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이들의 의견을 수렴·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다른 보훈단체들도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과,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건 관련자를 모두 유공자로 편입하는 데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유공자 관련 안전을 다룰 때 국민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지 국가보훈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보상법과 유공자법은 성격이 다르며 민주화운동 대상자들을 유공자로 인정할지 여부는 이들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 온 행위와 사

건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개정안의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며, 민주화운동 대상자들을 유공자로 인정해서 국가와 국민들이 계속 계승·발전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므로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국가보훈부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법 적용 대상자와 관련하여 사망·부상 정도면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죄판결, 해직된 분들까지 포함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입장이 필요하고, 4·19, 5·18과 부마항쟁, 6월항쟁 등 다른 사건 사이의 사회적 합의의 차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의견이 필요하며 국가유공자법에 포섭할 것인지 별개로 법을 제정할 것인지 입법체계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위원장님, 저희들 정부 측 의견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 왔는데요.

○소위원장 김종민 나눠 주세요.

지난번에 저희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쟁점들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입장을 오늘까지 정리를 해 오기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왔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이 자료 쟁점에 대한 의견들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으로 인정할지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원식 의원님 등 민주유공자법 안에서는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사망자·부상자)분들을 전부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백서를 기준으로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유형이 12·12 군사반란 항거 등 145개 유형의 사건으로 정리가 가능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145개 유형으로 정리가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건이 여러 개 묶인 것도 있기 때문에 사건 유형은 145개 유형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보훈은 공히 인정되는 국가 기여 유공 행위(특별한 희생이나

공헌)에 대해서 국민 존경의 대상으로 예우하는 국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분으로 인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훈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유공 인정 차원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민주 관련 보훈 대상 사건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관련 사건 유형은 145개 유형이고요. 여기에 부마민주항쟁이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146개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유공자법 제정 여부와 관련해서 판단을 할 때는 과연 이러한 사건들이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에 준하는 특별한 희생이나 공헌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일정 부분 그런 사건 내용들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 또 저희들이 4·19 같은 경우에는 상이 등급 같은 경우는 7등급으로 돼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 같은 경우에는 5·18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사망자라든가 부상자분들 그런 분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식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된 사건을 4·19나 5·18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대상자분들도 또 4·19 형식으로 할지 5·18 형식으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단체라든가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라든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가 되었을 때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민주유공자법 중에서 일정 부분 지원 사항을 축소하고 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안 되는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한 조정 부분은 사실은 민주화 보상의 대상 사건이라든가 대상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보훈 대상 영역을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보훈 영역에 포함될지에 대해서 먼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계승·발전 등 기념사업 관련입니다.

계승·발전 등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2001년 7월 달에 제정이 돼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보상법 제23조, 부마항쟁보상법 16조 등에도 일정 부분 기념사업 관련되는 규정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입법 체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85년 이후 현행 보훈 관련 법령체계는 국립묘지법이라든가 국가유공자단체법 등을 제외하고는 대상자별로 법률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대상 체계별로 할지 아니면 행정 기능별로 할지에 대해서는 정책의 복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차장님, 지금 민주유공자법 입법안이 있잖아요, 발의된 안. 발의된 안을 보셨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소위원장 김종민 발의된 안에 따라서 해당 사건을 추린 게 이 145건입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렇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적용 대상자가 나오는데 우원식 의원님 안도 그렇고요 전재수 의원님 안도 그렇고 4조에 보시면 1호에 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불자, 2호에 민주화운동 부상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 인용하는 것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망자라든가 행불자라든가 상이자라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발행한 백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는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서를 보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런데 보상심의위 자료에 따라서 심의를 통과한 사건·대상자가 하나 있고, 또 이 유공자법에는 국가보안법·형법에 저촉되는 사건은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형법이라든가 일반 국가유공자들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혜택이 제외되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법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는 게……

○**소위원장 김종민** 민주유공자법에 그런 법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국가보안법과 형법에 해당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 표를 만들어 주셔야지.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러니까 그런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정보 접근상 파악이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아니, 그런 내용을 보고해 주셔야지. 이 법이 이것을 다 하겠다, 이렇게 보면 오해가 있잖아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국장 오진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를 할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보안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걸러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를 말씀하실 때는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일단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저 질문……

○**소위원장 김종민** 예, 얘기해 보세요.

○**윤한홍 위원** 145건의 사건명이 이렇게 나열돼 있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 거기다가 사람 숫자가 이렇게 쭉 나열돼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법안 심의를 하려면 각 항목별로 각 사건별로 간단한 개요 그다음에 거기의 주 행동자가 누구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게 항목별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법률안 심의를 할 수가 있지. 제목만 가지고 몇 명 이렇게 있는데 법안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보훈처에서 제공해 줘야 되는데 방금 차장 이야기는 자료가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까, 보훈처에?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자료를 받아서라도, 아까 행안부에 자료가 있다고 안 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행안부 소속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이에요……

○**윤한홍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아이템별로, 왜냐하면 이게 오래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의 개요가 뭐고 여기에 어떤어떤 분들이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됐고 결과는 어떻게 됐고 그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다. 이게 아이템별로 나와야 그중에서 이것은 채택하자, 이 아이템은 여기서 채택하면 안 되겠다, 이것을 심사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막연하게 제목만 보고……

보면 대부분 노동민주화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제목을 보면 노동민주화, 남민전, 남조선 해방 전략당 사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읽어 보면 교육민주화 투쟁, 박정희 정권 반대, 부천서 성고문 규탄대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뭔지를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 가지고 법안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소위원장 김종민** 일단요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훈처에서 만든 자료의 이 항목은 일단은 참고만 하시고 이게 이 법의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남민전 사건 이런 것은 지금 민주유공자법에 해당이 안 되는 사건들이예요.

그러니까 보훈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정리를 해서 이 민주유공자법의 취지에 맞는 사건들을 추리는 과정을 성실하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사건이 뭔지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일단 이것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차장님한테 질문 좀 할게요.

지금 핵심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유공자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를 들어서 4·19 혁명 관계자는 현재 민주유공자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국가유공자.

○**김성주 위원** 국가유공자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4·19 혁명에 참여한 분들로 법상……

○**김성주 위원** 그다음에 5·18도 마찬가지로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한열 열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민주화유공자입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지금 국가유공자법이 나 다른 법률 보훈 체계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안 들어와 있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를 들어서 고문 피해자인 박종철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6월 항쟁을 촉발했던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가장 기여가 있는 희생자로 기억할 텐데 이 경우에 민주화에 공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요?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현재 보훈 관계 법령에는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사회적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박종철이나 이한열이 민주화유공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것은 별로 없지요, 현재 사회적 분위기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라든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해서 인정된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확실히 민주화유공자가 맞다, 어떤 사람은 조금 판단의 여지가 있다, 이런 게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것이지. 아까 얘기했던 이한열과 박종철과 같은 경우에 민주화에 공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의견들은 없는 거지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필요한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4·19나 5·18도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국가유공자가 된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어쨌든 보훈의 영역은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다른 국가의 유공……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4·19나 5·18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국회가 그런 사회적

인 분위기에 따라서 입법을 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거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4·19라든가 5·18은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서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한열과 박종철 같은 경우에도 그런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다면 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그런데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가요, 보훈처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정리한 부분들은……

○**김성주 위원** 논의가 가능한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민주유공자법이 민주화보상법에 있는 내용을 대상 사건이나……

○**김성주 위원** 보상법 이야기하지 말고, 보훈처 스스로도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는 민주화운동 관련 대상자 중에서 민주화유공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면서 입법 절차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보훈처의 입장은 아닌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지요. 4·19와 5·18처럼 충분히 사회적 합의와 입법을 거쳐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하는 거고요. 거기까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일단 의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보훈처가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부터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입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깔려 있어요. 임혀요, 그렇게.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든 이미 국가유공으로 인정되어 있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이것은 사실 보면, 왜 사회적인 이견이 별로 없느냐? 집단적이고 집중적인 기간에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쉬웠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3·1 운동 관련해서 아무도 얘기 따로 안 합니

다. 훌륭한, 집단적이고 모두의 기억으로 남아 있으니까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독립유공자 서훈을 하는 과정들을 보면 개별 심의를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독립운동서훈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역사적으로 심사 기준 이게 많이 바뀌었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시대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 심사 기준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무정부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어도 정부 수립 이전에, 한국전쟁 이전에 사망하거나 그쪽 활동을 정리했으면 보훈 대상, 서훈 대상으로 지금 인정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집단적이고 집중적으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쉽지만 지금 이 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별적이고 시기별로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김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들 놀라고, 국민들이. ‘이한열 열사가 유공자가 아니야?’ ‘박종철 열사가 유공자가 아니야?’ ‘그러면 누가 도대체 민주화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헌신한 사람이라는 거야?’ 이렇게 법적인 구멍이 있으니까 이 제정법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훈처가 인식을 너무 좁게 바라보고 있으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나는 모르겠다, 합의해서 오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실제로는 약간 무리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 자료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별도의 사건 대상자의 심의·조사기구가 발의된 법안 안에는 없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없습니다.

○박용진 위원 없지요. 그냥 이렇게 145개 유형이게 다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확인된 사건과 인물……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건 및 대상자를 그대로 민주유공자법에서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심의기구는……

○박용진 위원 저는 심의기구도 사실은 더 있어

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후에라도 이 사건들 말고, 지금 이것은 종료됐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종료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민주화보상법이 살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하고 사망자나 부상자로 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민주유공자법에 편입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 이후에도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개별적이고 집중적이지 않은 이러한 민주화운동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국가적인 유공자로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지금은 자동 연계인데 이것을 심의기구를 따로 둘지에 대한 문제는 고민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법을 놓고서 4·19와 5·18하고 비교하는 것은 ‘당신은 3·1 운동 때 하지 않았으니까 개별적으로 따로 독립운동을 한 것 아니야, 개별적으로 따로 적색노조 했고 따로 적색농민활동, 농조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운동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편협한 해석하고 똑같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두고, 행여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훈처가 개별 독립운동자에 대한 서훈을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듯이 우리도 이 법 안에 그런 기구를 두는 건 어떤지에 대한 논의로 확 좁혀서 얘기를 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것은 시행령에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발의가 돼 있어요.

○박용진 위원 아니, 없다고 지금 그래서.

○소위원장 김종민 그것은 법에 조항을 넣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박용진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다 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윤주경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한열 열사나 박종철 열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 법이 꼭 돼야 된다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해 드려야 되지만 그 외에 따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19나 5·18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국민들이 원해서 된 거지 이분들이 해 달라고 해서

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화유공자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이분들은 해 줘야 된다는 그 목소리가 만들어질 때 그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너무 조금하게, 이 법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해 할 필요가 없고 정말 의미가 있는 거라면 그 목소리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독립운동가 개별 하셨다는데 그것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지 그분들이 ‘나 이거 해 줘’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것은 분명히 보상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보훈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좀 다른 문제고 정말 4·19나 5·18처럼 이것이 의미를 갖는지도 좀 더 우리가 역사의 시간에 맡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런데 참고로 이 법이요 한 10년 이상 논의되고 있거든요. 역사의 시간이 너무 또 길어지면 그것도 직무유기가 되니까 하여간 논의를 좀 해 봅시다.

○윤주경 위원 직무유기라기보다는 신중한 거지요.

○윤한홍 위원 제가 몇 가지 좀 지적을 할게요.

보훈처가 이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 있게 검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연 여기에 들어 있는 분들을,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한 거예요. 법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민주유공자가 돼야 된다고 법안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훈처가 이 일을 하는, 이제 보훈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당하게 과연 이게 4·19나 5·18 정도의 동격이 되는지? 동격이 되는 레벨이 있고 안 되는 레벨이 있는 건지 그것을 분류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러프하게 그냥 법안을 던져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중에서도 누구는 레벨이 상당히 높다, 누구는 또 안 된다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법안 심의를 하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사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세월이 너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 개요라든지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분류된 자료도 좀 정확하게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이것을 제정안으로 갈 건지 기존에 있는 유공자법에 넣는 개정안 형태

로 넣어서 갈 건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심사를 거친 다음에 우리가 소위에서 좀 엄격하게 논의할 수 있는 틀을 줘야 되는 겁니다. 보면 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한쪽 진영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쪽 진영에서는 ‘전부 유공자로 가자’ 이라고 또 한쪽 진영은 ‘야, 그것 아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답은 안 나옵니다.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훈처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법이 만들어지면 역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다, 또 사회적 합의가 됐으니까 법으로 가자.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는 겁니다, 다들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 줘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된다면……

자, 유공자가 뭘니까? 국가유공자가 있고 또 독립유공자가 있고……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5·18민주유공자……

○윤한홍 위원 5·18민주유공자법 제정이 별도로 된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윤한홍 위원 그러면 그 수준은 아니지만 그 수준은 안 되지만 민주화에 대한 공은 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돈으로 보상해 준 것 아닙니까? 그때도 그런 거예요. 국가유공자 레벨은 아니지만 민주화에 공이 있으니까 돈으로 세금으로 보상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안도 국가보훈부가 되면 좀 더 다 들어서 정치하게, 유공자 레벨이 있고 유공자가 안 되고 그냥 공로가 있다. 공로가 있으면 어떤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포용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신신하게 새롭게 논의를 해 보고 제안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일부는 수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다 똑같이 국가유공자라고 이렇게 내놓으면 국민들 중에 일부는 ‘야, 그것 국가유공자 맞다’고 찬성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일부는 ‘야, 그게 뭐 국가유공자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매번 그런 분들하고 논쟁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해 달라는 그 부탁을 내가 드립니다.

○이용우 위원 제가 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종민 예, 얘기하세요.

○이용우 위원 어떤 사건에 대한 평가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그리고 아까 ‘5·18과 4·19 처럼 국가유공으로 볼 수 있느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가유공자법에 통합하는 것은 사실은 시기가,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이 법에서 기본적으로 4조에 관련 법, 민주화보상법과 부마민주항쟁 보상법 해서 심의·결정된 사람이 일단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 72조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되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다 제외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또 하나는 7조 3항에 따라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 자료에 있는 대상의 사람 중에서 또 네거티브하게 국가보안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제외되고 또 어떤 건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은 보훈심의위원회 법 조항에 그게 주어져 있거든요, 심의할 조항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유공자법 제정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외를 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민주화유공자지만 이 사람 심의 대상에서 국가유공자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화유공자법으로 해 주고.

또 하나는 대상을 이렇게 확대한 것이 아니고 일단 민주화 심의됐던 대상자 그리고 제외 제외하는 과정이고 그것은 이 법의 취지에 보면 또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보훈심의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어떠한 것들을 뺄 수 있게 해 주면 대상은 더 특정되고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으로는 크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처가 보훈부가 되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게 각각의 국가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유공자로 뺄 사람 그다음에 논란이 있는 것은 심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을 더 격상할 수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민주화유공자법을 제정법으로 하는 게 맞고.

특히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게 이런 걸 시행령에서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고 걸러내겠다고 그래야지. 이 대상을 전부 이렇게 해 놓고 ‘이

게 다입니다’ 이런 자세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장치들이 이 법안에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유의동 위원님.

○유의동 위원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지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마땅하고요.

그런데 어찌 됐건 지금 이것이 여기서 더 걸러질 사건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진 게 지금 825명이고 여기에서 다른 법적인, 형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이 돼서 걸러질 분들이 있다. 걸러져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은 그러면 대상이 825명보다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줄어들면 800명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제정법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법이라든지 이 안에서 그분들을 선택적으로 포섭해서 안을 방법이 없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안에는 그런 심의위원회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물론 좋은 입법 취지를 가지고 개별 의원님들께서 발의는 하셨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체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엉성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고쳐 가지고 완성된 것을 제정법으로 무리하게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법률들을 조금 적절하게 활용해서 그 안에서 포섭하는 것이 훨씬 더 입법 체계 면에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한열 열사나 박종철 열사나 이런 분들을 왜 포섭을 못 했는지를 좀 찾아서 하는 게 낫지. 지금 145가지 사건을 일일이 저희가 여기서 따져 가지고 이 사건은 들어가고 저 사건은 안 들어가고 이것을 법안소위에서 해야 될 영역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우리 소위가 논의를 좀 해 가는 방향은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용우 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민주화보상법이나 부마민주항쟁 보상법에서 대상자가 확정되는 게 이렇게 해서

픽스된 겁니까? 픽스된 게 아니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법안이 살아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살아 있고 새로운 대상자가 발견되어지고 심의해서 하면, 이게 팔백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픽스가 된 게 아니고 새로운 사실이 발굴되고 그 사건과 연관된 게 확인이 되어지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서 민주화 보상 대상이 되는 거고요. 되면 그 사람은 일단 민주화유공자의 대상이 되면서 다른 조건을 따지는,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딱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안 늘어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법체계상으로는 그 보상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발견되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발견되어진 사람 중에서 대상이 되었다가 심의를 하면서 민주화유공자가 되기도 하고 또 민주화유공자 중에서도 격이 아주 높고 우리가 모두 다 ‘아, 이 정도는 민주화유공자보다도 국가유공자 쪽으로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합의가 있다면, 이런 연쇄적인 작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의동 위원** 지금 제 의견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최근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보상심의 대상이 된 분들이 최근 3년간 몇 명 정도 됩니까?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제가 알고 있기에는 최근 3년에는 없고요. 이 법안에 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대상자 심의한 게 실질적으로 2010년도 정도에 마지막 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의동 위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역사라는 건 저희가 가정할 수가 없으니까.

대한민국이 아주 극도로 나쁜 방향으로 퇴행을 하지 않는 이상 국가 공권력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하는 사건들이 있을 것을 전제로 이 법을 만든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능성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만 지금 이 대상 총 800여 명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걸러내면 그 대상이 훨씬 더 줄지 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보훈처한테 부탁드리는데 것은 아까 윤한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개별 사건에 대한 설명과 지금 해당 당사자들의,

만약에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법률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로 걸러질 수 있는 대상이 얼마가 되겠는지를 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취지 이해하십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참 오래됐고 계속 이런 논쟁이 많았고 또 이한열 열사나 박종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훈처에서 이야기했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서 된 사건을 열거하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보훈처에서 명확한 입장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런 면도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안 거쳤지만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보훈심의위원회를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어떤 조건이라든지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유공자로 갈 것인지 그냥 보상법에 있는 것으로 끝날 것인지 이런 것을 보훈처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이런 장치를 해서 국민들 여론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무리다 하는 것은 절대 안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 보훈처에서 명확하게 안 해 주고 이대로 놔놓으면, 여야가 서로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밖에서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농성하고 단식하고 하셨던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가 입장이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어찌 보면 부처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국민 전체의 공감대라든지 이런 데 형성해서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딱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 주면 법이 통과돼도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고 어떤 사람은 단식해서 계속적으로 몸을 희생시키는 이런 문제에 빠지게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 보훈처에서 간사님들하고 의논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정리를 해 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윤한홍 위원님.

○**윤한홍 위원** 박재호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제 보훈처가 보훈부가 되지 않습니까? 부가 되잖아요. 장관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정치권에서 논쟁하고 갈등하다가 법이 만들어지면 거

기 끌러가고 끌러가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보훈부가 확실한 기준과 방법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강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설득시키고 정치권도 설득시키고.

사실은 독립 전에는, 독립유공자 아닙니까? 거기다가 6·25를 거치면서 호국유공자가 됐고, 그 이후로는 지금 민주화유공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산업화됐다고 우리가 산업유공자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것은 행안부에서 훈장도 주고 상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하고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는 보훈부가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 줘야 된다. 그걸 보훈부가 되는 과정에서, 아마 인사청문회도 다음 주 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겠지요, 이제는. 그 과정에서 그걸 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정치권에 끌려가면서 ‘시키는 대로 했다, 우리는 모른다, 정치권에서 해서 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확실하게 해 주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보훈처에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한 쟁점은, 제가 오늘 보훈처 자료를 읽어 보면서 여전히 보훈부 승격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 여기 내용이 결론은 이겁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20년째 해 오고 있어요, 지금. 16대 국회 때부터 나온 법이잖아요, 이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2000년도부터 나왔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니까 20년이 넘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게, 이런 기관을 어떻게 우리가 정부 부처로 승격을 시킵니까?

사람들이 바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심야 토론, 100분 토론 이렇게 못 합니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 그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게 정부 부처하고 국회 상임위의 임무예요, 그게. 그 직무를 20년을 유기해 놓고 아직도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이게, 이렇게 무책임한 자세가 어디가 있어요?

사회적 공감대는요 바로 이 법안소위가 그 사회적 공감을 확인하는 논의를 하기 위한 대표 자

리입니다, 이 자리가. 여기서 토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안도 하고 보훈부는 이런 입장을 애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결론을 내는 게 이게 사회적 공감대입니다. 어디서 찾아요? 여기에서 공감대가 정리가 안 되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회적 공감대를 자기 생업 취소하고 그거 가지고 논의할 사람들 없습니다. 그것 하라고 다 여러분들 월급 주고 우리들 세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지. 어디 가서 맨날 사회적 공감대를 찾습니까? 저는요, 지금 20년 논의했으면 이미 논의는 오래 한 거고요.

오늘 유의동 위원님이 새로 제기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화보상법이 있어요. 국가유공자법이 있습니다. 이 두 법과 새로 제정을 해야 될 민주유공자법 사이에 법체계가 분리돼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걸 하나로 통합할 수 없느냐. 예를 들면 민주화보상법을 민주유공자법으로 고치고 그 안에 보상 심의와 유공, 기념 이 내용을 같이 통합해서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의견을 한번 제안을 해 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니면 국가유공자법을 고쳐서 국가유공에 민주유공의 자격 요건을 엄밀하게 규정을 해서 그 안에서 포섭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제안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다가 해 놔는데, 역시 이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은 없어.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얘가지요, 국회에서. 그래서 그건 국회에서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두 가지에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고 그게 없으면 오늘 얘기 나온 대로, 이 논의의 핵심은 예전에 사회적 공감대가 없었다는 것은 교육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렇게 특혜 요소가 있다 이래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민주화운동을 국가유공으로 인정하고 기리는 것을 반대할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민주화운동이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민주화운동이냐에 대해서 보상 심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여기에서 형법, 국가보안법 제외하고 그다음에 행불자, 사망자, 부상자에 대해서만 하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치·사회적 논란이 뚜렷하지 않은, 정치·사회적 논란이 없이 합의된 그런 사건에 한한다. 정치·사회적 논란과 어떤

이건이 없는 사건을 거르는 심의 절차 이것 하나만 만들면 지금 이 145건 중에 제가 보기에 적어도,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반수 이상은, 쪽 불러 주면 그거 이의가 없다라고 할 사건들이 한 반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을 만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심의 과정만 논의를 하면 되지, 이 법안소위에서 사건 하나하나를 다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심의 절차, 정치·사회적 논란이 뚜렷하고 심각할 만한 사건들을 심의해 내는 심의 절차를 특정을 해서 이 법을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박용진 위원 4·19 혁명 희생자, 부상자, 유공자가 4·19 묘역에 안장되시나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거기까지?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박용진 위원 유족은?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유족은 안 됩니다.

○박용진 위원 안장 안 되지요. 거기 몇 분 정도 되지지요, 그러면? 왜냐하면 묘역 새로 확장하고 해서, 제가 봤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최근 대상자. 왜냐하면 유의동 위원님 말씀을 유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의동 위원님은 희생자·사망자가 825 그다음에 부상자가 689, 여기가 합쳐도 한 1500 정도가 되지 않아요, 개별사건 명으로. 아, 계구나.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유족까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1000명은 훨씬 넘어가기는 할 텐데 법안 대상자들은 일단 그렇습니다.

인원 숫자를 가지고서 이것을 개별법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개정법을 통해서 통합할 거냐를 따지는 게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통합한다고 그러면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관련 법들과 통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 부분 아까 유의동 위원님도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시면 일단 민주화보상법이 있고 부마항쟁보상법이 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데요. 예를 들면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가 아니면 일정 부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화보상법을 개정해서 일정 부분 혜택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여지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물론 행안부 관련 사안입니다만……

○박용진 위원 이 제정법 발의의 핵심은 유공이라는 거잖아요. 국가유공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가장 핵심인 거잖아요, 유공자로.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래서 보훈의 영역에 넣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넣자는 말씀이신데 보시는 것처럼 양 법이 다 비슷합니다. 기본 이념이 ‘송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민주화 관련해서는 민주화보상법에서는 보상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보훈 영역에서는 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예를 들면 사건들을 어떻게 볼지 그리고 사건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그러면 4·19 같은 경우에는 1962년부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상해 등급을 7등급 체계로 하면서 심사를 거쳐서 갔는데 그렇게 할지 아니면 5·18처럼 5·18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한 걸 그대로 인용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위원 저는 유의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법에 포괄하고 하는 것도 검토 대상일 수 있고, 일단 보훈부가 어떻게 이 문제에 관련해서 입장을 가져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를 가지고서 보기도는 집중적인 사건,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4·19나 5·18처럼 그런 사건들이 아닌 개별적이고 시기적으로 좀 다른 사건들과 관련해서 포괄해서 보훈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이런 인원수 가지고서 따질 문제는 지금은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한홍 위원 이제 보훈부가 되면서 행안부하고 관계도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주도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부분이 행안부에 가 있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념사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윤한홍 위원 이게 행안부에 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 국가 서훈업무를 담당하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 훈장이라든지 대통령 표창이라든지 이런 각종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상당히 가 있거든요. 그것도 정리를 같이 하셔야 돼요, 부가 되면서.

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참고로 생각을 하면, 훈장 같은 것도 레벨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또 산업유공자들도 금탑산업훈장, 은탑산업훈장, 동탑 이런 식으로 다 레벨이 달라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부가 되면서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유공자들도 그런 정도로 분류해서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유공자 레벨 하나이기 때문에 못 넣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레벨을 A급·B급·C급·D급으로 나누어 주면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조금 약하게 대우해 줄 사람, 많이 대우해 줄 사람 이렇게 하면 정말 많은 분을 우리가 포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딱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돈으로 줄 분, 명예를 줄 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자, 이렇게 하시지요.

오늘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사실 원래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것은 특혜 요소가 있다 그리고 셀프 입법이다, 이 두 가지 논란이었어요. 셀프 입법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 입법과 관련돼서 정당이나 정치인 중에서 혜택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논란이 됐던 교육이나 취업에서 특혜 요소는 이 수정안에서 다 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논란에서는 아, 그냥 아무것도 해 주지 말자 이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게 대상자인데 대상자 문제는, 아까 국가유공자로 이 법을 포섭해서 국가유공자의 조항에 민주화운동 유공자라고 규정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훈처 입장이 됩니까? 제정법을 안 하고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통해서 이 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거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5·18민주유공자법 제

정 당시에도 아마 국가유공자법에 포함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일반적인 국가유공자와의 성격의 차이점이랄까요, 그리고 상이등급 체계가 국가유공자는 예를 들면 군에서 다쳤다는가 했을 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7등급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18 같은 경우에는 14등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심사하는 기준들이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아니, 그것은 검토가 다 이미 됐어요. 자꾸 그렇게 도망 다니지 마시고, 이미 검토가 돼서 그건 국가유공자법 상이체제로 다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다 거기서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타당하냐 아니냐 의견을 내셔야지. 자꾸 논의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입장을 반대하면 반대한다 찬성하면 찬성한다 정리를 해 주셔야 돼. 시간 끈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국가유공자법의 상이등급 체계에 따라서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들을 유공자로 포섭시키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 사건을 어떻게 할지, 대상 범위를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건 당연히 합의가 필요한데 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유의동 위원이 제안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이게 가능하고 바람직한지.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지금 논의를 좀 더 진전시키려고 하면, 5·18의 경우도 국가유공자법에 포섭하는 논의를 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포섭이 됐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지금도 법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 심의 안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 국가유공자법 전체로 해서 다 포섭을 한다는 것이 아직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등급이나 판정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2단계로 접근하는 게 어떠냐. 일단 우리가 합의 볼 수 있는 유공자법을 하고 그리고 5·18도 그렇고 이걸 국가보훈법

체제로, 특히 보훈부로 승격하는 입장에서 행안부와 관계라든지 보훈체계 전반이라든지 이랬을 때 보훈체계 하나를 재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법을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 다 포괄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전향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이런 두 단계의 접근이 어떨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일단 오늘 나온 의견들을 다 종합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원의 내용 그다음에 법체계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 이 세 가지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앞의 두 가지는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혹시라도 국가유공자 체제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훈처가 한 번 더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일단 그 의견 제시가 없다면 민주유공자법으로 정리를 하는데 마지막 남은 쟁점은 대상자 선정, 대상자의 기준과 절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법체제로 본다면 이 145건이 다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금 위원님들이 하고 계세요, 특히 여당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그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해 주셔서 다음번 소위 때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 대상자 선정의 기준 '정치·사회적으로 이견이 있는 또는 뭔가 논란이 있는 대상자들은 제외한다. 그 제외하는 방식은 이러이러한 절차와 시행령에 어떤 심의위원회를 뒤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런 식의 법안 조항을 하나 넣어서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조항을 합의해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이 점에 대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훈처든 다음번 회의 전까지 여기에 대한 입장, 기준과 절차를 어떤 명문으로 법에 추가할지 이 입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아니, 다음 회의라고 딱 못박는 건 저는 동의가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소위원장 김종민 윤한홍 위원님, 이게 20년 논의를 한 거예요.

○윤한홍 위원 아니, 20년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충분히 준비를 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종민 우려한 것을 다 반영하면 되잖아.

○김희곤 위원 20년 동안 안 되면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해결을 하자고, 이번에.

○윤한홍 위원 아니, 20년 하지 마시고, 지난 5년 동안에 다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하셨잖아. 그 래 놓고 뭘 지금 와 가지고……

○소위원장 김종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잠깐 여쭙볼게요.

오늘 회의는 2시 반부터 속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시 반까지 1소위 회의를 할 수는 있는데 가능하십니까?

만약에 안 되면 일단 12시까지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현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의무군경은 의무적으로 군대에만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순직군경의 날 지정과 관련하여 형평성이 문제된다면 다른 분들도 함께 지정해 주면 어떤지 하는 말씀, 법으로 제정할지 시행령으로 할지 실제적으로 보훈처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말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나 개별법이 더 많으므로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대체로 자식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 줄 사람이 없는 점, 그 사람을 예우하는 입장 등을 고려할 필요 있다는 말씀과, 의무복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 상황을 고려한 특별한 예우가 필요한지 여부 등 입법 실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 행사로 인해 피해를 보는 대상이 없으면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부처 얘기해 주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위원장님, 이 건도 지난번에 위원장님 자료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배포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예, 나눠 주세요.

이 자료와 관련해서는 보훈처에서 지금 나눠주는 요구 자료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족에서 나눠 준 한 페이지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이 건 민병덕 위원님이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리기 위해서 갖다 놓은 자료인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더 특별히 존중할 법익의 유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식 중에서 추념식 성격을 갖는 행사는 현충일이 유일합니다. 이때 순직 의무군경을 포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추모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직 직업군경, 순직 의무군경, 전몰 직업군경, 전몰 의무군경,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순직 의무군경 관련되는 분들인데요. 이런 여러 유형이 있는 상황에서 그중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념일 지정으로 다른 단체가 피해를 보거나 문제 제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념일이 제정될 경우에 지금도 상이군경의 날이라든가 특수임무전사자 합동위령제 관련해서 날 지정, 고엽제 관련된 날 지정 등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별도 법적 근거 없이도 의무 순직군경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 금년도에 일정 부분 예산 지원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없이도 각 사건, 대상별로 관련 단체가 개별적으로 하는 추모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검토할 때도 국가가 예우와 존중,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몰군경유족회 회원이 지금 약 9만 명

이 되고요. 이 중에서 전몰 의무군경 유족, 순직 의무군경 부모유족, 순직 직업군경 유족 등 다양한 유족분들이 전몰군경유족회 내에 계십니다. 그래서 순직 의무군경 유족이 포함된 전몰군경유족회 내에서도 추모 대상이라든가 범위라든가 날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박용진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순직 의무군은 이제 없어졌지요, 의무경찰은. 그런데 어쨌든 의무적으로 군을 가는 혹은 이전에는 의무경찰로 군역을 대신하는 이런 경우들의 순직하신 분들과 관련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성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다들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징집제를 폐지하지 않는 한 어쨌든 이런 대상자는 계속 나올 거다이고요. 또 특성상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족, 그러니까 가족, 부모가 사실상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이들을 모실 사람이 없는 상황, 물론 집단적으로야 추도와 추념의 대상으로 삼는 거지요. 추도의 대상으로는 삼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개별적으로 기억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날을 따로 두는 것, 한 30년쯤 지나서 대한민국의 징집제가 폐지되고 모병제로 전환했는데 이 날짜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날짜입니까’라고 아이들이 물으면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기준과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굳이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합의가 안 됐다는 것으로 반대 의견을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가 따로 없더라도 국가의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후에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런 행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십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하시고 계십니다.

○박용진 위원 이후에 이분들의 제일 걱정은 그것 아닌가요? 이번에 우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 죽고 나면 그 뒤에 아이들 관련해서 이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의견 내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자료 제목하고 안에 본문의 내용이 안 맞습니다. 지금 순직 의무군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몰 직업군인 나오고 의무군경이 나오고 전몰이나 순직이나…… 정의를 딱 보면 여기서 직업군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징병제가 있는 한 국가의 부름에 간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직업군인은 직업으로서 군을 선택한 사람인데 그건 별도의 집합이지요. 별도로 직업군인 중에 순직을 하거나 전몰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또 그것 나름대로 기준을 해 주면 돼요.

그런데 이걸 한 그룹 속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하고 이게 다르다. 다르잖아요. 직업군인과 의무군인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자료 자체를 그렇게 작성을 하고 이것 같등이 있다.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훈부가 가져와서 같등이 있다. 이것은요 정말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직업군인과 의무 군인은 다르게 대접해야겠지요. 한쪽은 월급을 받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직업군인과 의무 군인……

○윤주경 위원 의무 군인도 월급 받잖아요.

○이용우 위원 월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있어서 똑같이 전몰을 했을 때도 다를 거고요, 순직을 했을 때도 다르게. 이런 기준들을 딱 설정을 하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유족회의 경우에 같등이 있을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이게 같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입법을 접근하는 자체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지난번에 이 쟁점에 대해서 몇 가지 보훈부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어떤 입법을 할 때 기본적으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 추가 요구를 한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입법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이겁니다. 어떤 법안이 입법이 됐을 때 다른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피해를 받거나 영향을 받을 때는 그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입법하고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또 별도로 입법 검토를 하면 됩니다. 그것

을 정리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됐다고 입법을 이루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입법을 통해서 다른 데가 피해를 입는 데가 있다면 그건 고려를 해야 합니다. 합의를 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 상충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그냥 ‘우리도 해 달라’ 이런 거면 해 달라는 그 단체나 그 이해관계자들의 입법을 검토하면 됩니다, 그때 가서. 그래서 그것은 이 입법을 미뤄야 될 이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 입법 때문에 어떤 단체가 피해를 입는, 이른바 제로섬 요인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단체들이 ‘우리도 해 달라’ 그러면 그 단체의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입법 검토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순직 의무군경과 관련해서 저는 보훈부도 그렇고 우리 국가가 너무 야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징병제도를 유지해서 젊은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뭐 전쟁이 났다, 그래서 모두가 다 군대 간다 그런 상황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평화로운 시기에 우리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 의무적으로 군경으로 모집을 해 놓고, 남들은 또 멀쩡하니 다 제대를 하고 사회에 복귀해서 또 오손도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몇 명만 죽어서 돌아와요. 그런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 날 하나 지정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논쟁을 하고 야박하게 군다는 게 정말 우리가 이 권한 행사를 제대로 하는 건지.

전 세계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이렇게 징병제를 가지고 나가서 죽은 젊은이들을 기리자고 그랬으면 아마 백 개의 날도 지정을 했을 겁니다.

제가 미국 LA를 갔더니 LA에서 우리 한국의 연합사령관, 부사령관 했던 장군을 기리는 무슨 무슨 장군의 날을 지정을 했더라고. 한미 간에 우애를 증진시킨 공로로 날을 지정을 해서 퍼레이드를 해 줘요, 매년.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야박합니까? 특히 우리가 안보나 아니면 국방 상황이 이렇게 엄혹한 상황에서 이런 것을 장려를 해 주고 이런 것을 기려주고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아파해 주고 이래도 사람들이 정말 가서 자기 목숨 내놓고 징병제도에 응할지 여부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렇게 야박하게 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논의를 오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박재호 위원 이제 부로 되지요, 보훈처가?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6월 5일 발족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부로 되면 행사도 많이 하고 이래야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것을 한 묶음으로 하지 말고요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별로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데도 그렇게 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법은 오히려 보훈부가 더 ‘이것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이래도 큰 무슨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분들의 한도 또 한번 들어 보고 그렇게 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보면 의견에 좀 부정적인 게 들어가 있으니 왜 안 하려고 하는지는 저는 도저히 그 자체를 이해를 잘 못 하는 입장인데요.

○소위원장 김종민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박재호 위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김종민 윤한홍 위원님.

○윤한홍 위원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조금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주신 자료 3페이지 보훈 기념일 현황 있지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또 유엔참전용사 이런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저희들 기념일이 열여섯 가지가 있거든요. 있는데, 나머지는 행안부에 있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13개 기념일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고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 관련되는 기념일은 이렇게 돼 있고, 이분들은 8번에 현충일에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념일이 들어가면 국가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겁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국가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해당 부처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보훈처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여기서 보훈처에서 하는 건 어느 거예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재향군인의 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보훈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재향군인의 날은 어디서 주관해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윤한홍 위원 국방부에서 합니까, 보훈처에서 합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보훈처 소속인데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훈처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이것은 전부 보훈처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합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윤한홍 위원 그런데 순직의무군경의 날 이것을 제정으로 법안을 따로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은 특별하게 독립된 법을 만들자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기념일에 넣어 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이 법안을 왜 따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냐고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통상 다른 단체들은 이 기념일에 넣어 달라고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기념일에 넣어 달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3·15 의거기념일 있잖아요. 이게 언제 들어갔냐면 2010년인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데 그때 3·15 의거 단체들은 이 기념일에 넣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순직 의무군경은 이 기념일에 넣어 달라는 게 아니라 법을 따로 해 달라는 거니까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입법 체계상으로 봤을 때는 현충일도 대통령령으로……

○윤한홍 위원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묻는 것만 답 하라니까.

여기 기념일이 아니고 별도로 법을 해 달라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장정교 보훈선양국장 장정교입니다.

이분들께서는 말씀처럼……

○윤한홍 위원 다른 살 붙이지 말고 딱 그것만 이야기하라니까, 왜 자꾸 살을 붙여?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장정교 본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 자식들을 기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윤한홍 위원** 아니, 기념일로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법을 해 달라는 이유가 뭐냐고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저희가……

○**윤한홍 위원** 안 그러면 보상이나 이런 것, 금전적인 게 관계되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금전적인 보상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윤한홍 위원** 관계는 없고, 그러면 됐고요.

두 번째 또 내가 궁금한 게, 여기에 의무군경도 순직이 있고 전몰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이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6·25라든가 베트남전이나 전쟁에서 돌아가시면 전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 돌아가시면……

○**윤한홍 위원** 그러면 순직 의무군경과 전몰 의무군경이 다른 겁니까? 그러면 이 전몰 의무군경도 의무복무 하다가 그리 된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렇습니다. 전몰 의무군경……

○**윤한홍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순직 의무군경만 별도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법을 만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윤한홍 위원** 말고, 지금 현재 나온 법만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팩트 확인만 해 주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전몰 의무군경도 빼고 순직 의무군경만 이것을 해 달라는 겁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러니까 평시에 돌아가신 분들만 그다음에 직업군인들도 빼고요.

○**윤한홍 위원** 그것도 빼 달라는 얘기고. 아니, 직업군인…… 지금 내가 묻는 것만 이야기하러니까요.

전몰 의무군경하고 순직 의무군경은 다 의무군경이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런데 전몰은 빼고 순직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윤한홍 위원** 이 법은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내가 또 궁금한 게 군인들, 병사들도 다 의무복무 하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윤한홍 위원** 우리 군인들 다 의무 징집 아닙니까? 그러면 병사들도, 가서 순직한 병사들에

대한 순직병사의 날이 있습니까?

○**소위원장 김종민** 군경이잖아요, 군경. ‘군’이 들어가 있잖아.

○**윤한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하고 경하고 같이 본다 이겁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여기 다 포함된 거예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윤한홍 위원** 그러면 전몰을 뺀 이유는 특별히 뭐 있습니까?

○**이용우 위원** 전사자 보호에 대한 다른 것을……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 순직 직업군경이나 순직 의무군경, 전몰 직업군경 이분들을 경찰에서 별도로 기념하는 날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 네 부류에 대해서? 이 자료 준 것 중에서?

○**소위원장 김종민** 없으니까 이 법을 만든 거지.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법률상으로 기리는 날은 저희들 현충일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전체를?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윤한홍 위원** 경찰에서는 별도의 날이 없고?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이게 경찰하고 군인하고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김종민** 군인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윤한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몰 의무군경이나 순직 의무군경이나 또는 직업은 뺀다 치더라도 같은 의무인데 이것은 들어가고 이것은 안 들어가는 것도 저는 약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립된 제정법으로 할 건지 법정 기념일에 들어가서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좀 해 가지고 보훈부가 대안을 제시를 하세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 형평성이 안 맞아서 안 된다 하지 말고. 제가 몰라서 몇 가지 팩트를 확인해 본 건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현충일에 그냥 다 같이 엮여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나는 싫다. 별도로 법을 만들어 달라’ 지

금 이건지, 이 법이.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법론상 옳지 않다. 이분들 우리가 대우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우를 해 줘야 돼요. 대우를 해 줘야 된다면 무조건 보훈처가 안 된다 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제시를 하라니까. 방법을 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이용우 위원 한 가지 확인 한 번만.

보니까 전몰은 현충일에 의해서 다 기념이 되는 거네요? 전몰은 현충일에서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직 의무군경은 현충일에 의해서 되지 않아요 때문에……

○윤주경 위원 아니, 되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산소마다 꽃도 다 놓아 드리고 그때 같이 다 모시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안 된다 소리만 하지 말고 기념일로는 되는지 이런 것까지 대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논의를 하게 해 줘야지. 이거 매번 국회에서 싸우게 해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기념일을 만드는데요 대통령령으로 만드느냐 법률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입법 체계상으로는 만약 만든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현충일에 같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여기 보면 입법으로 기념일을 기리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 63개더라고요, 근로자의 날 포함해 가지고. 맞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법 자료에 그리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15페이지, 관련 개별법으로 제정된 기념일이 63개예요. 해양안전의 날, 여성의 날, 수산인의 날, 도시농업의 날…… 이 63개 한번 다 보세요. 자기 청춘을 국가에 헌신했다가 주검으로 돌아온 젊은이들을 기리는 날을 제정하는 게 이 63개와 비교형량해서 그게 가볍나요? 그 정도도, 특별히 기념해야 할 정도가 안 되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자, 현충일 좋아요. 현충일이라고 하는 게 좋은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까 전몰군경 얘기를 했는데 전몰 의무군경도 의무이긴 하지만 이미 이분들은 지금 대부분이 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이 순직 의무군경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직도 부모들 가슴속에, 이 부모

들이 불 같은 낙인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예요. 이분들 살아 계실 때 이것을 국가가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 이것 하는 게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전몰군경·의무군경은 당사자가 돌아가신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현충일에 같이 현충할 만한 그런 정도로 포섭해도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정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부모들이 아직 살아 있어요. 가족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국가가 당신 아들·딸들 국가 위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이 날의 제정을 통해서 함께해 주는 게 이게 가치가 있을까요?

왜 자꾸만 현충일에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 집단이 한 4000명 돼요, 대한민국에. 저는 이 4000명이든, 저는 4명이라도 서해수호의 날처럼 정말로 이분들은 남들하고 너무 다른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가가 기억하겠다, 함께 하겠다 저는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김한규 위원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대통령령입니다.

○김한규 위원 모범이 됩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범은 없는 상태에서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이 행안부에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모범이 없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김한규 위원 그러면 이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들어갈지 여부는 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 정하는 거지요?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면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발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집어넣으려는 안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아마 전 정부에서, 현 정부 들어오기 전에 전 정부일 때도 순직의무군경 관련된 분들이 안타깝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질문에 답을 해 주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그때에도……

○김한규 위원 아니, 질문에 답을 해 달라니까요.

이번 정부에서 지금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집어넣으려고 논의 중이냐고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지금 현재는 논의 중에 있지 않습니다.

○김한규 위원 없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김한규 위원 그러면 정부가 하지 않으면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넣을 수 없으니까 법안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 규정에도 보면 이 규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한 기념일이라고 돼 있고 실제로 60개 이상의 기념일이 개별 법률에 따라서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게 맞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법률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다만 체계상으로 봤을 때 현충일이라든가 6·25 전쟁일이라든가 6·10 만세 기념일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보훈 관련 기념일도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법률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체계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그것은 저는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이 모법도 없이 그렇게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중요한 국가기념일을 정하는 것 자체가 체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행정부가 하지 않으니 국회가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행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그 체계에 따라서 기념일 규정을 고치겠다, 아니면 고칠 계획이 있고 언제까지 고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고려해서 말씀하신 체계의 정합성도 고민을 할 텐데 저는 체계의 정합성도 그게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지도 의문인데다가 저희가 논의할 수 없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기념일에 대한 필요성은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지난 정기국회에서 예산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해서 여러 가지 보훈행사 관련된 예산들 또 각종 어플이라든지 이렇게 홍보 관련 예산들을 문제 제기해서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다 되돌려졌거든요.

당시에 저희 정무위에서 다시 예산소위를 열어 서 의견을 구하지 않고, 그게 어떤 과정에서 됐

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님이 위임을 받아서 동의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다 되살아났습니다. 그게 일이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데 어플을 만드는 데 쓰는 것보다 이런 순직의무군경의 날 하나를 만드는 게 오히려 우리 정부가 국가유공자나 아니면 선양에 대한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또 홍보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권한이고 그게 체계에 맞는데 왜 국회에서 논의하나 이런 투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필요성이 홍보 효과가 어떤지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공감하신다면 저희한테 문제 제기하기 전에 행안부랑 연락하셔 갖고 규정 개정안을 내셨어야지요. 그런 노력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반대하시는 건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주경 위원 저 하나 여쭙볼게요.

지금 순직의무군경의 경우 현충일에 초청 대상이고 기념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도 다.

○윤주경 위원 그런데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따로 만들어진다면 현충일 초청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렇게 따로 되면.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게 무슨 검토가, 포함이 되는 거지. 아니, 무슨 자기 재산 나눠 주는 것처럼 야박하게 해. 정말 답답한 얘기하고 있네.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현충일은 당연히 모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아니,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대화할 겁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좀 말씀하셔야지. 지금 무슨 자기 재산 나눠 주는 거예요?

○박용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만 확인, 우리 서해수호의 날 따로 있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서해수호의 날은 따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러면 천안함 연평도 포격 관련해서 그건 안 해요? 따로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왜 우리 위원님 물어보는데 검토한다고 그러세요?

○윤한홍 위원 수호의 날 기념일에 들어가 있지, 정부 주관 기념일에.

제가 팩트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

금한 게 아까 답변을 하려다 못 했는데 문제인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아까 검토를 했다고 했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알고 있기로는 그때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가 행안부에서 좀 소극적인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그때 행안부가 반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음 회의 때 좀 설명을 해 줘요.

○소위원장 김종민 아니에요. 오늘 결정해야 돼요. 다음 회의로 넘어가면 안 돼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때도 마찬가지로 현충일과 중복되는 문제를 가장 많이 얘기를……

○윤한홍 위원 그러면 문제인 정부 때는 안 된 것을 지금 와서는 정부가 바뀌었는데……

○소위원장 김종민 국회에서 결정해야 돼.

○윤한홍 위원 국회에서 그때는 왜 안 했냐고. 그때는 다 할 수 있는데. 국회도 압도적이고 정부까지 갖고 있는데 안 하다가 지금 와서 하자는 건 난 이해가 안 되고.

○소위원장 김종민 정부가 반대한 거니까 국회는 별도 의견을 할 필요는 있어요.

○윤한홍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렇고.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것은 관련 개별법으로 기념일이 지정된 부분하고 정부 기념일에 들어간 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엔 관련은 국제적인 부분입니다. 아래쪽은 보면 유엔 참전의 날……

○윤한홍 위원 아니, 내 말 뜻을 못 알아들었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안전의 날 기념일을 정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각 부처에서 기념일을 정하지 않습니까, 개별법으로?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윤한홍 위원 그것하고 정부 기념일에 들어간 있는 기념일하고 차이가 뭐냐고.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 부분은 제가 행안부에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있는지, 법 운용을 행안부에서 해셔요.

○윤한홍 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의무순경·군경이니까 경찰청이나 국방부에서 개별법으로 정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국가보훈으로 하지 말고. 지금 그 방법이 있잖아

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라니까, 보훈처에서.

각 부처에서 법으로 기념일 막 정해 놔잖아. 많이 있네요, 여기 검토의견 15페이지 보니까. 그리하면 되지.

○소위원장 김종민 그것은 안 되는 거고요. 이것 보훈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무위에서……

○윤한홍 위원 아니,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아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 있는 분에 대한 날이면 국방부가 가능한데, 돌아가신 분은 기본적으로 보훈처 소관인데 어디 가서 해요?

○윤한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검토해 달라니까요.

○소위원장 김종민 아니,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단니까.

○윤한홍 위원 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오기형 위원 저도 잠깐 하나 1분만 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종민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전 정부, 이 정부 막 이야기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계속하다 보면 수십 년에 걸쳐서 관료들의 입장이 좀 다양하게 명료하지 않은 이유로 해서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라는 단위에서 논의하고 정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말씀들 중에서 이것을 만들면 다른 불이익이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개별법이든 대통령령이든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윤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 소위에서도 우리 내부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거니까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이렇게 하시지요.

이 문제네요 기본적으로 여당·야당 위원들이 다 발의한 법이에요. 우리 윤주경 의원님 또 민병덕 의원님, 여당·야당이 공히 다 발의한 법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정치적인 입장 차가 뚜렷해서 우리가 이것 심의를 좀 신중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법이 복잡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법이에요. 그냥 시행령으로 할 건지 입법할 건지 이 결정만 하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직무유기를 해 온 거예요. 판단을 안 해 온 거야.

그래서 이 입법이 추진돼서 전체회의에 올라가더라도 만약에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하는 게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면 그건 나중에 중간에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보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정부가 아직까지는 시행령으로 제정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입법 추진에 대해서 오늘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계속 논의하자 이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 이 법에는 안 맞을 것 같고, 정확하게 이 법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오늘 충의를 모으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윤한홍 위원** 저는 오늘 의결은 힘들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아니, 해야 돼.

○**윤한홍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소위원장 김종민** 이렇게 시간 끌 일이 아니에요.

○**윤한홍 위원** 시간 끄는 게 아니라니까. 아직 클리어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소위원장 김종민** 뭘데, 그 내용이 뭐냐고.

○**윤한홍 위원** 아니, 그 훌륭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걸 정부가 반대를 한 거야. 아니, 여기서 밀어붙일 생각하지 마. 밀어붙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직 납득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소위원장 김종민** 윤한홍 위원님, 문재인 정부 때 안 됐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윤한홍 위원** 아니, 안 된 게 아니라 안 했잖아. 안 해 놓고 지금 와서 왜 갑자기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냐고. 그리하면 안 돼요.

○**소위원장 김종민** 정무위가 그때 일을 안 한 겁니다, 정무위가.

○**윤한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아직도 클리어하지 않다니까. 각 부처에서 개별법

으로 하면 되지. 왜 그 개별법은 안 되고 꼭 이 법을 해야 되냐고.

○**소위원장 김종민** 부처가 보훈부예요, 부처가. 순직인데 부처가 어디 있어.

○**윤한홍 위원** 아니, 그다음에 정부 주관 기념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해서 가져오시라고.

○**소위원장 김종민** 할 수 없다고 지금 결론을 내렸어요.

○**윤한홍 위원**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법을 밀어붙이면 안 되지요.

아니, 정부에서 기념일의 규정에도 못 넣는 것을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으로 밀어붙입니까?

○**소위원장 김종민** 그게 지금 63개가 있어요.

○**윤한홍 위원** 아니, 그건 안 돼요.

○**소위원장 김종민** 63개 법으로 돼 있는 거야.

○**김희곤 위원**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순직의무군경 유족이 포함된 전몰군경유족회 내에서도 추모 대상, 범위 날짜 등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견이 있고 어떤 것들이 합의가 안 됐습니까? 지금 당장 아니면 나중에 해 줘도 되는데……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보시면 김영호 의원님 안은 순직군경의 날 제정으로 해서 대상이 직업적인 군인이나 경찰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의무군경도 포함이 되고요. 범위가 다릅니다. 넓고요. 그다음에 민병덕 의원님 안은 직업적인 분들은 빠지는 안이 되겠습니다. 윤주경 의원님 안도 그렇고요.

그래서 또 순직의무군경분들 입장에서는 직업군경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더라도 김영호 의원님 안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민병덕 의원님 안이나 윤주경 의원님 안으로 해야 될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관련해서도 지금 4월 넷째 주 금요일로 되어 있는데 날짜 관련해서 왜 4월 넷째 주 금요일로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김희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그런 분들하고 합의가 좀 되고, 이게 오늘 당장 해야 될 그게 있나 싶기도 하고요.

○**박용진 위원** 그러면 보훈처에서요, 지금 엄청난 갈등 요소는 아니잖아요. 조정 합의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소위원장 김종민 아니, 이런 것 좀 그만해. 침대축구를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요?

○박용진 위원 잠깐만요.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이 엄청난 갈등 사안을 놓고?

○소위원장 김종민 아니, 침대축구는 그만하자고. 이견이 있으면 얘기하고, 대안도 없이 옛날 침대축구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

○박용진 위원 말씀해 보세요.

몇 회나 간담회 하고 조정 작업했어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저희들이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박용진 위원 몇 회나 간담회를 주재하고 조정 작업 하셨냐고 지금 묻잖아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나중 일이고.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지난해에도 저희들 국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몇 주 전에도 만나 뵈고요.

○박용진 위원 누구를요?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순직군경……

○박용진 위원 순직과 의무군경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 날짜 차이 있다. 지금 이거잖아요? 이게 조정이 안 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조정을 못 했어요, 이 정도를 보훈처가? 그것을 보훈처가 조정을 못 해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 못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아니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충일과 중복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

○박용진 위원 그것은 보훈처 얘기고요. 보훈처는 지금……

○윤한홍 위원 아니, 법안소위를 표결하는 게 어디 있어. 저것은 한 사람만 반대해도 안 하더라도, 지난번에 실손보험법.

○소위원장 김종민 아니, 내용이 있으면……

○윤한홍 위원 지난주에 그랬잖아, 지난번 소위에서.

○소위원장 김종민 내용이 없이 그냥 침대축구는 안 돼.

○윤한홍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소위원장 김종민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윤한홍 위원 아니, 법안을 갖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위원장이? 지난번에 김성주……

○소위원장 김종민 아니, 여기 귀 당이 대표발의를 한 법이야, 이제.

○박용진 위원 잠깐만요, 얘기하잖아요.

합의가 충분하지 못하고 내부 분열과 갈등 양상이 있다고 이렇게 써 났으니까 그러면 뭘 가지고 하고 있는지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네. 이런 것 해소를 안 하고 지금 여기 와 가지고 나 몰라라, 반대 입장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뭐 대단한 갈등이에요, 지금? 나라 팔아먹을 갈등이야? 아니잖아요. 이 정도도 조정 못 해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소위원장 김종민 박용진 위원님, 지금 우리 시간이 12시가 넘었으니까 이 문제는요,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윤주경 위원 그런데 이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종민 잠깐만요.

○윤주경 위원 전몰군경유족회에 순직의무군경 유족이 포함, 그 협회 안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같이 계십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아니요, 포함된 게 아니고 순직의무군경으로 대안을 마련한 겁니다.

○윤주경 위원 그러니까 법안은 그런데 지금 전몰군경유족회라는 이 단체 안에 순직의무군경 유족도 회원이시고 또……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다 포함되어 계십니다.

○윤주경 위원 순직직업군경도 회원이시고 다 같은 회원이시라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다 같이 계십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이렇게 하시지요.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일단 좀 휴회를 해야 될 것 같고 정회 동안에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저는 위원님들께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견이 분명해서 토론을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법안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것 우리 서로 다 알아요. 그것 서로 솔직하게 다 인정을 하고, 그런 건 그만하자고요, 이제.

우리 국회가 예를 들어서 이게 정치적으로 당의 이해관계나 아니면 진영의 논리와 노선이 부딪혀서 안 된다 그러면 몰라요. 이 날 하나 지정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맨날 논의하고 밖에서 울고불고하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국회가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뚜렷한 논리가 있어서, 근거가 있어서 이 의견을 좁히는 토론이 가치가 있다면 심사를 계속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따 오후에 정회 이후에 다시 개의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한번 잘 심사숙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 저도 마무리……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이것을 밀어붙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훈처에서 정부 기념일에 넣는 게 나은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겠다, 법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정확하게 의견을 주셔야 돼요. 기념일에 넣을 수 없는 건지 넣을 수 있는 건지, 또는 개별 법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국회가 법으로 밀어붙이는 게 맞는지 판단해 주셔야……

○**소위원장 김종민** 밀어붙이는 건 아니지.

○**윤한홍 위원** 아니, 밀어붙이는 거지요. 소위에……

○**오기형 위원** 윤주경 의원님 안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윤한홍 위원** 잠깐만, 제 말……

지난 소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손보험 관련 법안 처리할 때 다 찬성했는데 김성주 위원 혼자 반대했다고 그냥 보류시켰어요.

○**소위원장 김종민** 반대 논리가 분명하니까 그것 검토해 보자고 한 거지.

○**윤한홍 위원**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김한규 위원** 한 번이지 않았습니까. 이건 몇 번째입니까?

○**윤한홍 위원** 민주당에서는 한 사람만 반대해도 법안 통과가 안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훈처라는 집행부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걸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소위원장 김종민** 보훈처 의견은 의결의 고려 대상은 아니지, 참고 대상이지.

○**윤한홍 위원** 또 우리 위원님들 반대하는 분 있잖아요. 반대하는 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번 논의를 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야.

○**윤한홍 위원** 여러 번 논의했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방법론상으로 이분들 입장 이해해요. 방법론을 조금 더 연

구를 해 보라니까.

○**소위원장 김종민** 그것도 오래 연구할 것도 없고 이따가 다시 속개하게 되면 입장을 얘기를 해주세요.

○**윤한홍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소위안 합니다, 날치기 표결하면.

○**소위원장 김종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김종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 관련된 위원님들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처리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가능한 한 빨리 의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와 어떤 조건을 거쳐서 의결할지에 대한 최종 의견을 한번 주시고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보훈처 차장님, 법안이 3개인데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기존 법안에 보시면요 2020년도에 제출된 김영호 의원님 안, 21년도에 제출된 민병덕 의원님 안 그리고 21년도에 같이 제출된 윤주경 의원님 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김영호 의원님 안은요 순직군경이라고 해서 직업군인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안은 개념상은 순직 의무군경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요 여기에는 평시에 돌아가신 순직 의무군경뿐만 아니라 전몰 의무군경도 포함이 돼 있고요, 또 보훈 대상으로 자살자는 잘 안 하시는데 자살하신 분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윤주경 의원님 안은 평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보훈·보상 대상자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윤한홍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정리가 덜 돼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음 번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번에 우리가 이걸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 정리도 하고 범위나 이런

걸 좀 정치하게 다듬어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 법으로 제정하는 게 맞을지 정부 기념일에 넣는 게 맞을지 그것까지 확정해서 가져오세요. 그리 해 가지고 여기서 다 같이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맞지 저는 일방적으로 표결한다든지 이 부분을 어설픈 오늘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다음 번까지 결론을 내려 오세요. 법안도 정리를 하고, 법으로 갈 건지 기념일에 넣을 건지, 그것까지 다 마무리해서 오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번에 처리하자고 저는 제안합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다시 정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차장님, 이것 다음 번까지 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저희들 기존에 행안부 협의 과정…… 지금 심의자료 2항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개별법으로 제정된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기념일을 하나 넣은 경우고요. 마지막 장에 보시면 기념일만을 위해서 한 것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딱 기념일을 위해서 법을 제정한 것은 근로자의 날 제정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 관련된 대표적인 기념일이 현충일인데 그게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윤한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시 정부 내의 조율 절차를 거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일단 조율하셔서요 다음 회의 전에 우리 소위원님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전날 주면 안 돼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시고 그걸 전제로 해서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차장님,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박재호 위원 어쨌든 보훈처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발의한 의원님들한테도 다 설명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가장 무난하다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해 주고 나서 다음에 갖고 올 수 있게끔, 가능하면 빨리 조치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사자들하고도 만나서 설명을 해 보고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 이상 2건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참조해 주시고요.

법률안 주요 내용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하는 내용과 나무 유골함을 사용하고 안장 상태 점검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따라 경우에는 유족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전통 장례문화상 한 번 사용했던 묘지에 안장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공묘·공실로 남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나무 유골함을 사용할 수 있게, 현재 도자기 유골함에 결로가 발생하여 유골이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무 유골함을 사용하도록 하고 유족이 안장 상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만, 유골함 용기 형태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점과 유족의 유골함 용기 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감안할 때 시행령에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사법에 이장 또는 화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개장을 허용하고 있어 장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저희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안장 능력이 부족한

국립묘지의 실정이라든가 이장 시에 발생하는 불용 묘지의 증가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안건, 7쪽 관련해서는요 유골함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 시행령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장 상태의 점검은 묘의 개장이 수반되는데 관계법인 장사법에서는 묘의 개장은 시장 등 자치단체에 신고할 정도로 행정관청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을 통한 일률적 허용보다는 점검을 희망하는 경우에 보존처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윤주경 위원 이게 대전현충원에 있는데 산청 이런 데로 가겠다 그러면 이 법에서 보면 유족이 요구하면 옮겨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인 거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렇습니다.

○윤주경 위원 그런데 거꾸로 산청에 있는데 서울현충원으로 오겠다면 옮겨 줄 수가 없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것은 이천호국원이거나 이렇게……

○윤주경 위원 원하는 데로 못 간다는 거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윤주경 위원 그렇지만 하여튼 최대한 이것은 반영, 요즘에 보니까 유족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 집 가까운 곳에 원하시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시더라고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런데 장묘 문화상 한번 이장하려면, 공실이 생기는 데는 다른 분들이 안 들어오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면 또……

○소위원장 김종민 아, 그런 게 있구나.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윤주경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특유의 장례문화 그런 부분 또 위치가 안 좋다고 변경을 해 달라든가 했을 때,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주경 위원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것을 다 못들어 주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이 법이 어떻게 보면 법은 법인데 현실성이 없는 법이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의도는 좋은데.

○소위원장 김종민 김희곤 위원님.

○김희곤 위원 이장을 원하는 수요가 좀 많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우리 담당 국장이 잠깐만……

○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 남궁선 보훈예우국장입니다.

현재는 대규모로 많지는 않고요. 지금 호국원이 전국에 이렇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은 묘역이 부족해서 지방으로 간 경우에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대규모로 요청하는 민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지금 현재는 이 법이 없으면 이장 요청을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한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국립묘지 내에서의 이장은 안 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국립묘지법상에.

○소위원장 김종민 다른 데로 가는 건 괜찮은데 묘지 내에서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구나.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밖으로 나가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강민국 위원 다 하셨어요?

○소위원장 김종민 예, 말씀해 주세요.

○강민국 위원 거기 보면 안장능력 확충계획 보니까, 제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산청의 호국원이 제일 작게 돼 있네요. 규모가 1만 기로 돼 있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산청호국원이 경남, 부산, 울산, 저기까지 다 쓰거든요. 아시지요?

○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 남궁선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작아 가지고 대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 남궁선 지금 그래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게 지금 조성 규모 보니까 호국원 중에 제일 작게 규모가 돼 있네요.

○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 남궁선 예, 처음 조성할 때 안장 수요를 감안해서 1만 기로 했는데요. 지금 그게 다 차고 있어서 더 추가로 묘역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얼마 정도요?

○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 남궁선 지금 1만 기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특히 산청 많이 신경 쓰시라는 말씀을…….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문제없도록 저희들 잘 조치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경남, 부산, 대구, 울산까지 다 쓰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리고 그것하고 관계없이 보면 계속 나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훈부로 승격을 하면서 자꾸 시행령에서 검토를 하겠다, 저는 이런 답변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시행령을 언제까지 개정을 하겠다 또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법으로 하는 것보다 시행령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예를 들면 연내에 시행령으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답변하셨듯이 또 개장을 하는 게 어려우면 요청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과 시행령과 규칙에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시행령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답변들이 보면. 이것은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이고.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시행령으로 고민하겠다고 하면 지금 5월 달이니까 연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고 행정부에서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이 자리에서 법이 발의가 됐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다 검토를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이 법안소위에서는. 시행령 검토의견이 있다면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문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문안으로 언제까지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라는 의견을 얘기해주셔야 그 의미가 있지. 지금 법안소위에 와서 ‘시행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은. 아셨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윤한홍 위원 저도 한마디……

여기 이 법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후손이 서울의 국립묘지에 있는데 정착을 경남에 가서 했다, 그러면 찾아뵙기가 산청으로 가는 게 편하니까 또는 그 근처에 있는 국립묘지로 찾아뵙는 게 편하니까 거기로 좀 옮겨 달라 이런 수요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을 거고.

또는 국립묘지에 있기는 있는데 너무 한구석에 있으니까 좀 좋은 자리가 아니니까 옮겨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 그런 판단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사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나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어떻습니까, 차장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장을 하고 나면, 예를 들면 기존에 서울현충원에 계시던 분들이 산청지역이나 경남으로 갔을 때 서울에 있는 터 이런 부분들은 또 공터로 남게 되거든요.

○윤한홍 위원 다른 분들이 안 쓰시려고 한다?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싫어하시거든요. 그게 가장 큰……

○윤한홍 위원 그것도 참 문제네요. 이것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을 법으로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소위원장 김종민 자,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이게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하니까 이 문제는 지금 의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되 말씀하신 나무 유골함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안을 다음 번 회의 때까지……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것은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답변했는데 8쪽에 보시면 이게 사실은 대전현충원에서 21년도에 유골함의 물고임 현상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 가지고 그 이후에 국립묘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요, 그 밑에 부칙으로 작게 나와 있는데 국립묘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나에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되는 용기’를 저희들이 시행령에 추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묘를 쓸 때 보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수요는 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이게 추가적으로 수요가 있고 하면 시행령에 꼭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령에 반영은 기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윤주경 위원 그러니까 나무 유골함은 생화학적으로 분해되는 용기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이게 한지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화학적으로 분해되기 쉽게 한지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선호는 없더라고요.

○**윤주경 위원** 나무 소재도 생화학적으로 분해되는 것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어서 굳이 안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안 해도 가능합니다.

○**윤주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시행령 검토, 반영 필요성 또 반영 문구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우리 소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법안 자체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법률안 주요 내용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권태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유골이나 시신이 없더라도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립묘지에 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묘는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서 개정안의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묘는 현행법의 정의규정과 상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보훈처, 얘기해 주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이 안은 윤주경 의원님께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발의하신 안인데요. 저희들 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의 국립묘지 안장 여력상으로 독립유공자 관련해서는 잔여 묘지가 185기 정도밖에 안 되십니다. 그런데 대상자분들이 한 7000여 분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선행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국립묘지법상으로 묘는 시신이나 유골이 있는 것을 묘로 개념 정의가 저희도 그렇고 장사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

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윤주경 위원**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제가 이것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대표발의한 국립묘지법이 정부안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국립묘지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정부안을 먼저 실행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안장 여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시행령에도 담을 수 있는 것을 제가 절충안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보훈처에서는 이것조차도 못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현재로서는 지금 이분들이 대상자 분들로 했을 때는 순국선열하고 애국지사로서 안장이 안 되신 분들이 산골, 멸실된 분들이라든가 묘소를 찾을 수 없는 근거가 없는 분들 해서 7000여 분 정도가 됩니다.

○**윤주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담아 가지고, 제가 발의한 것에는 행정적으로 이런 것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임한 상황 속에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제가 발의한 법안이 이것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두 안이 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의동 위원** 지금 여력이 몇 구라고 그랬어요, 몇 자리?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대전현충원에 185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의동 위원** 185기? 그런데 예상되는 분은 몇 분이에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지금 약 7000여 명 되십니다.

○**유의동 위원** 그러면 독립유공자는 앞으로 백 팔십칠 분 이상 유해가 발견되거나 그러면 이제 는 더 이상 못 모셔요, 국립묘지에?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이제 봉안당에 모시거든요. 봉안당에 모실 수 있습니다.

○**윤주경 위원** 700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대상이 되는 분은 400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7000명을 다 하라는 소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의동 위원** 아니, 이 숫자를 다투기 이전에 나는 정부의 입장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력이

독립유공자를 백팔십칠 분까지만 모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모실 수 없다라는 취지로 들려요.

○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 남궁선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묘역이 남아 있는 대전현충원에……

○유의동 위원 아니, 묘역을 더 안 만들 거냐고요, 그러면.

○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 남궁선 지금 묘역은 저희가……

○유의동 위원 우리나라 예산이 없어요, 땅을 살 예산이?

○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 남궁선 지금 저희가 연천에 현충원을 조성하는데 그것이 완공되는 시기가 2026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묘역 안장 여력은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의동 위원 아니, 이 법이랑 그거랑 뭘 상관이나고. 그때 되면 여력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묘의 여력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26년 되면. 내가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나서.

○윤주경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생기는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도 한 자리도 내줄 수 없다는 말로 들려요, 지금 그 말씀은.

○유의동 위원 아니, 대한민국이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이분들을 모셨는데. 그분들 피땀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컸는데 백팔십칠 분밖에 못 모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 남궁선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묘역은 그렇고요. 현재 봉안당이 서울현충원하고 대전현충원에 있기 때문에 봉안당으로 또 모실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런데 왜 여력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유의동 위원님 화가 나게 만들어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지금 법에 하는 것은 산소를 쓰겠다는 거거든요, 봉안당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묘는 저희들 통상적인……

○윤주경 위원 그러니까 그 묘 한 자리를 주기가 그렇게 어렵냐고요.

○이용우 위원 이것은 이런 상황이면 독립유공자를 위한 특별 묘역을 언제까지 얼마를 확충해서 다 모시게 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분들을 다 한곳에 모이게 해서 더 기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이야기해야지.

○유의동 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지금은 그러면 칠천 분을 안 찾을 거예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아니, 이분들은 현재로서는 시신이나 유골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

들이 위패로서 모셔 놔거든요.

○유의동 위원 아니, 앞으로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이 되는데 벌써 포기를 하느냐고요. 여러분들 애기는 포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들께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정부 의견 들을 것 없이 저는 우리 위원회가 법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말이 되느냐고, 이게!

○소위원장 김종민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이 시설이나 하는 문제들은 기술, 실무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입법의 전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입법을 하면 바로 즉시 시행해서 예산이나 이런 게 준비 안 되면 무슨 장애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후에 심의 절차라는 게 있어서 심의 절차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시행하는 것에 대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법 취지상 반대하지 않으시면 법안 의결하시고 그리고 이 법의 시행, 그러니까 이것에 따르는 시행 일정은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위원장님, 제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일단 개념상으로는 묘지법이, 장사법도 그렇고요 시신이나 유골이 없으면 묘로 안 봐 주는 그런 개념상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 유골이나 시신이 안 계시지만 예를 들면 대한민국장을 받았다가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들을 국립묘지에 산소로 쓰고 나머지를 위패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안장대상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훈격을 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의동 위원 보시라고요. 잠깐만요, 보시라고.

이 칠천 분은 언젠가는 우리가 찾아서 모셔야 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공간이라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이 돈 내라는 겁니까, 여기다가! 아니, 우길 것을 우겨야 될 것 아니냐고, 우길 것을!

○윤주경 위원 그런데 이것 반대하는 보훈처의 주체가 보훈처 차장님이세요, 아니면 보훈처장님이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이것은 차장, 처장 입장이 아니라 정부 입장입니다.

○**윤한홍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법안을 보면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경우에 영정이나 위패로 한다는 게 지금 보존처 이야기고……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현재 모시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런데 이 법안은 전원을 묘를 하는 게 아니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거쳐서 그중에서도 엄선해서 묘를 하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 법을 반대하고 무시할 이유는 아니에요.

거기다가 정 안 되면 영정이나 위패로 하신 분들은 좀 더 넓은 여유 있는 공간으로 크게 해 준 다든지 이런 방안도 제시를 하고 또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시신이 없더라도 이것은 묘로 하자 이렇게 결정하면 거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 법이 나는 그렇게 큰 무리한 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법이 전원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안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데 따라서 하자는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독립유공자분들을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이분은 안장하고 안 되고를 결정하기에는 그러한 재량권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윤주경 위원** 아니, 서훈되지 않은 분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서훈된 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우할 자격이 없는 분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김종민** 글썄,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분들에 대해서 유골이 없어서 위패만 모셨던 분들을 안장 절차로 승격을 시키자는 것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지요?

○**윤주경 위원** 그러니까 차장님이 안장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껄끄럽다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장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를 하는 것이 차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세요, 주어진 임무고.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리고 현재로 봤을 때 이분들이 유골이나 시신이 있으시면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없이 당연히 안장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신이나 유골이 안 계시니까 문제입니다. 그런데 원래 당연히 안장 대상인 분을 시신이나 유골이 없으시다고 해서 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올리는 자체도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윤주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정부안은 독립유공자의 시신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고 이런 조건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조건을 다실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큼, 그러니까 국가보훈처가 보존부로 승격하면서 보존이란 무엇인가, 부로 승격하면서 뭐가 달라져야 되는지, 지금까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는지를 열어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한 것보다도 더 안 하겠다거나 그냥 지금 정도만 하면 된다가나 이것은 부 승격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발의한 법안이 지금 보존처가 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거라면 그것은 당연히 제 법을 반대하셔야 될 것이 있지만 못 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함해서 더 넓혀서 하자는 건데 굳이 지난 수개월간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긴 논의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참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김희곤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쭙볼게요.

독립유공자 배우자는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독립유공자 본인의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 봉안당만 가능합니다. 봉안당만 가능하고, 그것은 독립유공자 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분들도 배우자가 계시는 경우에는 봉안당에 가능하고요. 개별적으로 산소 쓰는 이유는……

○**김희곤 위원** 아니, 뒤에 정부안을 내놓은 것 보면 봉안당에 영정이나 위패를 모시고 있다가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합장하게 되면 같이 합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를 들면 배우자가 시신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김희곤 위원** 배우자는 원래 거기에 본인 유골이나 시신이 있어서 묘가 조성됐을 때는 합장을

원하면 합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배우자는 원래 단독으로는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그리되면 영정이나 위패만 가지고도 자격을 줘 가지고 배우자를 같이 합장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 위원 그렇다면 아까 영정이나 위패밖에 없는 것도 인정해 줘야 되지요, 그런 논리라면. 그런데 이건 장사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장사법하고 국립묘지법이 시신이나 유골이 없으면 묘로 안 보고 추모실을,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희곤 위원 이것은 우리가 이 법을 바꿀 게 아니고 장사법을 바꿔야 되는 거네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법제처하고 다 심사를 받으면서……

○김희곤 위원 장사법에 막혀 있네.

○소위원장 김종민 차장님, 그러면 장사법하고 국립묘지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 조항으로 의견을 내주셔야지 ‘이렇게 개정해야 합니다’라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실 게 아니라. 이 입법 취지를 반대하지 않으시는데 그런 형식적인 조항상의 충돌이 있다면 관련 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된다면 이런 의견을 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지요?

○박재호 위원 차장님, 법이 하나 올라오면 보훈처에서 뭘 하는 겁니까? 의원님들이 법을 올리면 이 법의 취지가 뭔지, 중복되는 게 뭐가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어찌 돼 있는지, 어떤 법하고 중복되는지 이런 것을 딱 알아서 의원님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대신에 이 정도까지는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전에 하나도 안 하고 부로 승격하면 감당하겠어요? 내가 볼 때 처로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종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장님이 일단은 이 법의 취지에 근본적인 반대 의견은 아니시라고 보여지고 이 법이 다른 법률과의 충돌 내지는 다른 법률의 개정을 동반해야 된다면 이런 의견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법률 개정 의견을 다음번 회의 때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법을 동시에 의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방안을 우리 정무위에서 한번 찾아

볼게요. 그렇게 제안을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그런 문제가 있으면 법사위에 올라가서 통과가 안 되니까 하여간 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음번 회의 때까지……

8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법률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현 개정안은 순국선열로서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 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문의 자구를 ‘합장’에서 ‘안장’으로 일부 수정하는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보훈처, 이것 정부안이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저희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10건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참조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법률안 내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권태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총 15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안, 태영호 의원안은 월남전쟁 참전

인정기간 종료일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전재수 의원안은 1975년 4월 30일로, 태영호 의원안은 1975년 5월 16일로 개정하여 참전유공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요지는 월남 주재 민간인 구출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도 참전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참전의 정의라든지 파리평화협정 등 외교적 이슈, 다른 법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종합적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외교부 의견이 신중검토이고 국방부 의견도 신중검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1항요?

○전문위원 권태현 예, 1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이것을 1항부터 15항까지 각각 별도 심의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권태현 죽 설명드려도……

○소위원장 김종민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자유롭게 얘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위원장님, 안전이 완전히 달라 가지고 별도로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이견이 없는 것도 있을 텐데.

일단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남전쟁 참전 인정기간 확대에 관한 것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저희들은 참전 기간 및 참전 여부 판단은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 소관 사항이므로 국방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윤한홍 위원 아니, 이거 너무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월남에서 다 전역을…… 뭐라고 그러지요? 철수라고 합니까, 표현을? 철수해야 되는데 기한 내에 철수 못한 분들을 모시러 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십자성작전.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그런 걸 그 당시의 월남 전 참전의 연장으로 봐 줘야지 이걸 너무나 교조적으로 문구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국

방부 의견이나 보훈처의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근에 수단에 구출하러 간, 우리 작전한 것 있잖아요?

보훈처 차장.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윤한홍 위원 최근에 수단에 간 것 있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거기다 월남전이 얼마나 큰 전쟁인데 거기서 미처 철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출하러 간 건데 그것 며칠 지났다고 해서 이걸 전투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 왜 전투행위가 아니야? 수송 작전도 전투행위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국방부 실무자가 그냥 보낸 것 같은데. 수송 작전이 왜 전투행위가 아니에요? 수송은 전투행위가 아닙니까? 그러면 군의 수송함이나 수송비행기는 군사무기가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동의가 안 돼. 나는 이것 인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십자성작전. 우리 의원들도 법안을 잘 냈구만.

○소위원장 김종민 전쟁 중에 가서 내근한 사람들은 참전이 아닌가?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무자가 낸 이야기야, 이게.

○소위원장 김종민 좀 이해가 안 가.

○윤창현 위원 작전이라는 말을 누가 붙인 겁니까? 해군에서 붙인 거 아니에요, 군에서? 군에서 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것은 전투행위에 준하는 행위 아닌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국방부 공식 입장은 저희들한테……

○윤창현 위원 아니, 그래도 보훈의 입장에서……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윤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도 걸프전, 리비아 교민 철수 작전, 여러 가지 작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작전 관련해서는 전투가 아니라 구호물자 전달이라든가 난민 수송 이런 식으로 국방부에서 현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아덴만 작전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작전 행위인데 작전이라는 말을 붙였으면 인정을 받아야지. 이름만 작전이라고 그래 놓고 인정을 안 해 주면……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좀 더……

○**윤창현 위원** 좀 더 협의를 하하지요.

○**김희곤 위원** 참전의 시작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 사전에 준비하러 가고, 그건 전투 개시 일입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월남전 참전 기간 시작은 64년도에 시작했고요.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 협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참전이 끝났다고 본 것은 73년이거든요.

그리고 이 십자성작전은 75년도에 약 한 달 정도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석에 관한 여부를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차관계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참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아덴만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참전으로 인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재호 위원** 차장님, 국방부·외교부 의견을 다 들어 봤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그렇습니다.

○**박재호 위원** 딱 문서로 받아서……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문서로 다 받아서 요약된 것, 더 자세한……

○**박재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훈처의 입장을 설명을 한번 했습니까? 보훈처는 설명을 안 했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아까 담당 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 차례……

○**박재호 위원** 아니, 보훈처에서는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또 국제법에 호시나 이런 게 이슈화되지 않는다면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보훈처 입장을 전달해 봤습니까? 그것 이야기해 보세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대화는 나눈 적은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아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외무부나 국방부는 안 하려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되면 다음에 소위 할

때 국방부 누구누구 와라, 외교부 누구 와라 이래 가지고 위원들 앞에서 공격을 받게 만들어서 이게 되도록 해야지.

여러분들이 왜 그걸 갖다가 판단을 해서 이것 긍정적으로 해 주려고 했는데 안 해 준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외교부나 국방부 의견이 파리평화협정상 60일 내에 철수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법안에서 그 60일을 넘어서까지 참전으로 정해 버리면 이미 꽤 오래 지났지만 뒤늦게 법협정 위반 여부를 인정하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저는 현행 규정을 좀 잘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월남전쟁에 참전 또는 이와 관련된 작전에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국제협정상 참전은 앞 부분에 넣어 놓고 십자성작전처럼 우리가 특정 기간 내에 관련된 작전은 그냥 유공자로 인정을 하는 거지요. 그것은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파리평화협정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게 법안을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남전쟁에 참전 또는 이와 관련된 작전에 참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파리평화협정에 위반되는 겁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위원님 말씀처럼요 파리평화협정보다는 국방부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상자 특정이라든가 참전 여부라든가 그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훈대상자로 심사하고 하려면 모든 기초적인 자료가 국방부에서 넘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방부하고 다시 한번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김한규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나는 그리 봅니다. 정의에 보면, 현행법 정의 2호 있잖아요. 참전유공자란 그 항목에 ‘다만, 6·25전쟁이나’ 해 놓고 그다음에 ‘64년 7월 18일부터 73년 3월 23일까지’를 빼 버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빼고 6·25 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또는 월남전쟁 참전 플러스 다른 용어 하나 넣어 가지고 표현해 버리면 뒤의 ‘4월 30일까지’ ‘5월 16일까지’ 필요 없어요.

정의 규정을 조금 우리가 고치면 되잖아요. 국회에서 그것 정의 규정만 고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김한규 위원님 발언 취지라고 보는데 나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제가 보기에 김한규 위원님이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국방부의 전투행위와 관련된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금과옥조는 아니고 실무를 하려면 그게 아마 필요한 조항이기는 할 것 같아요.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까지 국방부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국방부 의견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서 이 법을 반영할 수 있는 안을 좀 만들어 주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관련해서 지금 범위가 어떻게 확장될까 이런 우려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 아니면 혹시나 더 불안해서 꼭 기한을 줄이겠다고 하면 태영호 의원처럼 5월 16일 정도까지 해서 할 때 십자성작전 외에, 여기 269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더 확장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이 조항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권태현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을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과 적용 대상자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뒤에서 계속 살펴보실 2번부터 14번까지 같이 묶여져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저희들은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만 참전유공자법이 기본적으로 참전군인에 대한 명예선양

을 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고요. 국가 재정 여건이라든가 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 등 여러 가지 다른 유사 법률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배우자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윤주경 위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은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후에 그 배우자에 대해서 예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돌아가시기 전에도 되는 부분들이 같이 다 돼 있습니다.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도 하고요. 돌아가시는 경우에도 하고, 같이 정의 넣어서 전반적으로 개정을 했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윤주경 위원 그러면 그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하는 거예요? 참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면 배우자에게도 또……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지금 이 개정법률안에는 참전명예수당, 생계지원금,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주택의 우선공급 이런 것들이 죽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 정의부터 해 가지고 생존해 계시는 동안, 돌아가신 경우 다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 이런 것들이 공헌이나 희생에 따라서 본인만 되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형평성에 맞게 보훈체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기형 위원 저도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주제는 보훈처의 의견을 같이 고민을 해서 수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훈에 대한 시스템적인 논쟁을 지금 3년째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전일대의 원칙, 이게 대한민국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 주고 예우를 해야 되는 것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우리가 계속 논쟁할 때 본인 그다음에 배우자 그다음 자녀, 그런데 본인에서 배우자까지 해서 배우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또 그런 걸 고려할 수 있고 또

아주 고령이면 고려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배우자를 또 같이 비슷하게 대우하면서 자녀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일반 복지의 영역에서 풀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훈의 영역에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많은 법안들의 논쟁되는 지점이 일반 복지로 풀어야 할 부분을 여기서 풀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 논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훈처에서 기재부랑 논쟁했던 부분이 단순히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시스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토론을 차분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윤창현 위원** 본인에 대한 것만 일단 하고, 살아 계실 때는. 그다음에 3번이 그건데, 돌아가시면 배우자 승계 이 정도까지만 하면 어때요? 살아 계실 때는 본인만 해 드리고. 그러면 본인한테 드리면 배우자한테로 흘러가는 거니까.

2번은……

(김종민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과 사회교대)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보상국장입니다.

지금 2번 사항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배우자를 넣자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애시당초 참전하신 당사자, 지금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명예선양을 주된 목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이후에도 어떤 쟁점마다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배우자도 같이 고려를 하지만 참전유공자 예우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분의 명예를, 그러니까 배우자의 명예를 제고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달리 생각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번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 유보를 하더라도……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예, 적용 대상 자체가 집중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윤창현 위원** 본인한테로 단정을 짓더라도 3번에 가면 승계가 있잖아요. 돌아가신 후 승계 그것은 해 드리자 이거지, 2번·3번을 합쳐서 보면. 3번은 신중……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아직 2번 논의하고 있거든요.

○**윤창현 위원** 그러니까 둘 다 신중검토지요,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지금 현재 2번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연결이 되니까. 조금 앞서가서 그런 거지만 2번·3번이 본인이 살아 있을 때도 배우자까지 확대고 3번은 돌아가시고 나면 배우자 승계 아니에요, 명예수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2번은 신중검토로 할지라도 3번하고 해서 두 개를 합쳐서 놓고 보면 살아 있을 때는 본인만 그리고 돌아가시면 배우자까지 적용해서……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그런데 승계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명예수당을 승계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3번 항에서 하고 계신데……

○**윤창현 위원** 그렇지요, 3번에서.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2번·3번 다……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명예수당은 말씀드린 대로 일신전속적인 거였고,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이 어렵거나 그러면 다른 지원 수단을 하자고 지금……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잠깐만요.

지금 참전유공자가 아까 말했듯이 6·25하고 월남전입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베트남전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러면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분들 배우자들도 연세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되지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 생존자가 13만 명 정도 되니까요 홀로 계신 분들이, 이미 혼자 계셨다거나 이런 분들 합치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배우자 말이에요, 배우자.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지금 13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고엽제후유의증 배우자와 형평성을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거기 들어갑니까?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고엽제후유의증 거기에도 배우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법에도.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러니까, 그런데 참전 유공자 배우자라는 분은 수명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월남 참전자들의 배우자분들하고 6·25 참전유공자분들의 배우자하고는 또 똑같은 그런 나이의 차이는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런데 그분들 연세가 많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그런데 월남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70대 초반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런데 그분들에게 예우를 갖추자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못살고 나라가 조금 처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 선진국으로 가면서 예우하자는 게 이 취지 같은데 보훈처가 계속 반대만 하네요. 그분들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나는 오늘 놀란 게 그거예요. 보훈처가 이상한 게 그분들 명예를 회복해서 넣어 주는 것은 찬성하는데 비용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결정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보훈처가……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아닙니다. 쟁점마다 저희들이 잘해 드리려고 하는 말씀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아니, 배우자 이분들 연세도 많고 곧 다 줄어들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그런데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아니, 참전유공자…… 요즘은 문화가 바뀌어서 같은 것으로 봅니다, 부부는. 세월이 바뀌었잖아. 과거에 못살던 시절하고 문화가 바뀌었는데.

○오기형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계속 이 논쟁을 보훈 관련해서 할 때 정부랑 논의에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상의 영전일대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예우도 해 줘야 되고 보상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족, 본래는 성인이 되기 전의 가족이나 독립된 생활이 어려운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동안 제도적 보완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 당사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관

계자를 그렇게 쳐우해 왔던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변형이 되면서 성인 이후에도 해 달라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이 받던 권리를 배우자에게 승계하자는 논의도 있었고 실제 승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녀까지도 승계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이미 일반 복지 영역으로 갈 부분인데 좀 과도한 것 아니냐 그런 논쟁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논쟁 자체에서의 문제의식이 저는 보훈처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 큰 틀에 대한 논쟁을 차분히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의원님들 여러 분이 이 법안을 내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만약에 보훈처는 예산이 안 돼서 안 된다는지 그러면 금전 보상만 하겠다는지 안 그러면 금전은 안 되니까 명예라도 이렇게 챙기겠다는지 이런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안 된다는 것으로 말을 하니까 나는 납득이 잘 안 돼서요.

○박재호 위원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예,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이런 법안을 왜 많이 낼까요? 보훈처가 모릅니까? 이런 법안을 왜 많이 내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아마 여러 가지 생계적인 어려움도 있으시고 저희들이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잘못하면 희망 고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런 희망 고문 좀 하지 말고, 이런 게 나올 때 보훈처가 적극 설명을 해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이런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재부하고 미리 이런 것 또는 아까 영전일대 원칙에 있는 이런 게 있다, 잘못하면 전반적으로 이만큼 커져서 감당을 할 수 없다 이런 설명을 위원님들이 내면 잘해 주기를 바라요.

이것을 자꾸만 이 자리에서 논쟁하면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못 하고 이게 예산이 되니 안 되니 하면 보훈처만 더 입장이 곤란하고, 보훈처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거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법은 통과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훈처가 미리 작전을 하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저는 사실 이 부분 위원님들 생각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예

를 들면 보훈처가 너무 무성의하다고 저는 봐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고 그러면 어떤 분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결혼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이 있을 거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다양한 유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생활이 어렵거나 힘든 분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답변이야, 그냥. 그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기형 위원님 말씀따라나 이런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보훈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고 이런 것을 좀 가져와야지. 그냥 무조건 '신중검토' 그러면 안 되고 끝입니까? 여러 가지 법을 낸 의원님들은 다 그분들 만나 가지고 면담을 해서 고민을 해서 법안을 냈는데 한 방에 아웃이에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저희들 부도 되고 하니까 기획재정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도 기재부 관련 부분 때문에 여쭙보고 싶은데요.

이 법안을 보니까 이 법안 시행한 이후에 사망하시는 경우하고 이미 사망한 부분의 배우자한테까지 지급하는 경우가 확연히 다를 것 같고.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를 보면 검토의견 쪽에 예산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의원들 법안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지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예산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지금 2번이 아니고 3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우자 승계?

○김한규 위원 예.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원래 참전하신 분의 명예를 국가가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소액의 재정 지원을 해 드렸던 건데 말인즉슨 배우자는 참전하신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성립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해 드린다고 하면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배

우자를 포함해서 일정 정도 소득이 이하일 때 일반적인 국민들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보장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참전유공자 예우법의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런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주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완을 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주경 위원 저는 이해를, 어차피 참전유공자는 명예수당이든지 뭔지를 받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사실은 평생 모신 배우자의 경우는 갑자기 정말 생계 수단이 없어지는, 나이가 너무 많으시니까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이것을 봤는데, 지금 살아생전에도 참전유공자랑 똑같은 예우를 해 주자는 게 2번이고 3번은 승계인 것 보면 이것은 돌아가신 다음인 거잖아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예, 수당에 관해서만.

○윤주경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드리던 거니까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드리는 것 조금 더 오랜 기간 드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그런데 법을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내셨는데요. 배우자 승계하는 문제도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 보니까 이미,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돌아가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 것까지 합쳐 가지고 하면 약 5조가 들어가구요. 그분들을 포함하지 않고 이 법을 제정하고 난 다음부터 생기게 되는 홀로 계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한테만 적용한다고 해도 약 1조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아니, 지금 참전유공자한테 지급되고 있는 수당이 얼마인데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월 39만 원……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말고 총액이 얼마인데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총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아니, 그 돈이 승계되는 것 아니에요? 그 돈이 승계되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5조라는 얘기입니까?

○윤창현 위원 안 쓸 돈을 쓰게 된다 그 얘기지요.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아니지, 지금 참전유공자한테 주고 있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예전에 참전유공자가 한 32만 명 정도 되던 시절에서 지금은 한 13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러니까. 거기다가 9페이지 검토의견 중간에 보면 참전유공자가 고령이라고 했잖아요. 평균 연령이 81세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그만큼 또 나이가 더 많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배우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나는 봐요. 거기다 또 배우자분들이 지금 해마다 급격하게 숫자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연세가 많으니까.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지금 한 23만 명 정도 배우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그분들이 연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김성원 의원님 안하고 서영교 의원님 안이 법 시행 이후의 사망자분들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참전유공자 사망 인원 추계하고 그다음에 미망인 발생 인원 이렇게 했을 때 연간 1238억 원 정도 소요되고요. 5년간 했을 때는 619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님하고 서일준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은 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기존에 미망인분들이 22만 명 정도 되시니까 기존에 돌아가신 분들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연간 1조 1724억 원 이렇게 해서 아까 담당 국장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5년간 한 5조 8000 이렇게 금액이……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현재 금액 곱하기 5가 5년이 아니라니까. 그분들이 5년 이내에, 이후에 다 살아 계신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게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분 중에서도 재혼을 하시거

나 다른 데 결혼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까지 배려해야 될 것은 아니지 않아요, 여기서? 그런 것 한 번도 검토 안 해 봤지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점점 줄어드는 인원을 반영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분들이 얼마나 사시고 돌아가시는 건지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도 없으면서 통계 숫자는 어떻게 냈어요, 이 금액을? 이 금액을 어떻게 냈냐고, 정확한 통계도 없으면서 조사도 안 해 보고.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저희들이 기존에 참전유공자 사망률이라든가 배우자 생존율, 배우자 사망률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거 율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여러분들 손에서 떠났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하잖아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참전유공자 사망률은 저희들이 한 7.6%로 보았고 배우자 생존율은 83.5% 정도로 봤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아니, 그러니까 참전유공자 돌아가시고 나면 보훈처에서 일체 관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보훈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명예나 금전이나 아무것도 해당이 없잖아요, 참전유공자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등록 대상이 아닙니까.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리도 안 해 놓고 왜 통계를 추정해서 적용을 하나요?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 보시라니까.

○윤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원래 참전유공자가 삼십몇만쯤 됐는데 지금 현재 10만 정도니까 그러면 한 20만 정도가 이 법 시행 이전에 돌아가신 분이기에 때문에 이분들이 다 살아 계실 거라고 가정하고 지금……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아니, 꼭 그렇지는 않지요. 돌아가시고 또 그다음에 해마다 참전유공자가 어느 정도 돌아가셨나 그리고 배우자가 같이 있었던 분들하고 비율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산정을 해 본 겁니다.

○윤주경 위원 배우자 중에도 일부는 돌아가셨을 수 있다는 것까지 가정에 다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굉장히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반영했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보세요. 의원님들이 이런 법안을 냈으면 먼저 참전유공자 중에 돌아가신 분 배우자, 참전유공자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손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예 노터치 아닙니까? 그분들 배우자가 몇 분이나 계신지 또 지금 살아 있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분들은 연세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도 없이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금액을 부풀려서 가져와 가지고 안 된다는 쪽으로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렇잖아요.

올해 나간 돈 곱하기 5가 어떻게 5년간 나가는 돈입니까? 그 발상이 틀렸잖아요. 올해 살아 계신 분이 5년 후에도 똑같이 살아 있다고 누가 단정을 해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좀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렇게 해야지.

○**윤창현 위원** 하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은 유족한테 반을 드리잖아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예, 유족연금이 60%……

○**윤창현 위원** 그러면 일단 반 정도라도 드리면 어때요? 그러니까 다 드리면 이렇게 많이 든다고 자꾸 안 된다고 그러니 공무원연금처럼 일단 시작을 반 정도 해 가지고……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러니까 윤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훈처가 그런 고민을 해서 안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윤창현 위원** 그래서 공무원연급에 준하게 유족연급 개념으로 39만 원을 40만 원 잡고 20만 원이라도 우선 드리는 것으로 해서 한번 하시면 훨씬 예산은 줄고 예우도 되고 그래서 케어를…… 아니, 사실 39만 원, 40만 원이 딱 끊기면 그 배우자는, 여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충격받는 게 그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노인들이 사실 돈은 많이 안 쓰지만 제로가 돼 버리면 순간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것을 찼다 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 정도 해 가지고 유족연급 개념으로.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러니까 윤창현 위원님도 좋은 지적 하셨는데 막연한 숫자를 가지고 막연하게 통계 내서 여기서 하지 마시고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공무원연급이나 다른 연금처럼 70%

승계했을 때 얼마, 50% 승계했을 때 얼마 이런 안을 정확하게 좀 보고를 하세요, 다음에. 그래서 대안을 좀 제시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이것은 돼’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예, 생활 정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감안해 가지고 대안을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러면 3번까지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 검토가.

4번, 참전유공자 유·가족 진료비 감면 방안 이것 조항 설명하세요.

○**전문위원 권태현** 21페이지입니다.

구자근 의원안은 진료비 감면 혜택을 참전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까지, 심상정·서일준 의원안은 배우자에게까지 유·가족 진료비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보훈처 의견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저희들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공수훈자라든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 등 그 배우자분들에 대한 혜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좀 더 기획재정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한홍**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앞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돼요. 검토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현재로서는 기재부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른 앞에 것에 대해서는 백번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진료비에 있어서는 배우자까지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부부가 다 나이가 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참전유공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는데 이것은 못 받는다는 건, 두 부부가 다 같은 나이에 거의 질병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족 아들딸 이것은 아니더라도 참전유공자를 모시는 부인까지는 진짜 진료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모르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법에서. 제가 다른 것은 없는데……

(윤한홍 위원, 김종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창현 위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배우자로

좀 한정을 하고, 유·가족 전체로 하는 게 힘들면 배우자만이라도. 그러면 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50% 얘기해서 죄송한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배우자에 대해서 50%.

그래서 지금 유족·가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들딸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유족·가족 그러면 아들딸까지. 그러면 배우자로 한정을 하는데 조금 힘들면 50% 이렇게 해서 좀 하세요. 22페이지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50% 안을 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국가보훈처복지증진국장 박봉용 복지국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의료비 지원이 가장 필요성이 높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두 가지 문제입니다.

아까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칙이 있는데요. 본인하고 배우자일 때는 본인 우선, 그리고 희생과 공헌 정도는 주로 상이 여부, 돌아가신 것 여부. 그렇게 하니까 두 가지 요건에서 본인 이면서 상이가 있는 분들이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에 따라서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정책의 우선순위인데요.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본인 중에서도 상이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일부 제한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탁 병원 같은 경우에 참 전유공자 본인도 연령 제한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하에서는 본인에 대해서 상이가 있는 부분부터 풀어 나가는 게 저희 정책 우선순위가 있고요.

○이용우 위원 지금 논의를 정말 비효율적으로 하는 게 그거예요. 기재부 재원이 얼마 든다 이러면 그런 원칙에 따라서 어디는 얼마까지 그다음에 이러한 경우하고 그랬을 때 재원의 소요가 맥시멈과 하한선을 줘야지만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기재부가 반대합니다’ ‘재정이 안 됩니다’, 예스 아니면 노를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치료비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경우에는 의료보험이라든지 다른 보훈병원을 통한다든지 케이스를 죽 나눠 놓고 얼마 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종합적인 그림을 가져와서 ‘이 정도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국가 재정으로는 이 이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더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이것 자체가 예산과 이런 걸 협의를 해 가면서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와서 ‘재정 많이 드는데요’ ‘기재부가 반대하는데요’ ‘협의를 안 되는데요’, 하지 말자는 소리예요, 이것.

○윤창현 위원 그렇지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법안의 여러 조항 중에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이번에는 본인 사망 후 배우자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들에 대해서 꼭 한번 해 드리자, 어떤 원칙을 잡아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2번은 안 된다, 오케이. 3번은 돌아가신 후에 배우자 50%, 그다음에 의료도 본인이 돌아가신 후 배우자에게 50%, 100% 이렇게. 그래서 본인께서 돌아가신 후에 배우자라고 하는 한 그룹을 딱 포커스로 해서 한번 이것을 일단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여유가 되면 확장시키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한번 패키지를 만들어 보시면……

저는 아까 간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데 배우자에 대한 인식 또 함장, 옛날에는 부부가 이렇게 따로 보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부부를 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시각을 반영해서 우리 보훈도 본인과 배우자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완전 가족, 아들이나 딸은 조금 따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번……

보훈수당도 돌아가신 후에 배우자에게 이렇게 해서 본인이 안 계신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꼭 한번 정리해 가지고 한번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서 추가로 확장을 시킬 거면 또 하고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한번 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지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알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리는데요.

방금 윤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이견이라기보다는 약간 생각을 좀 더 표현해 보면 보훈 영전일대의 원칙에 따라서는 기본인데 현재의 보훈 시스템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해 주는 것들이 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로 전에 한번 정리해 주셨었어요. 제가 한번 받아 본 적 있는데……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것을 한쪽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죽 가자라는 서로 간의 공감대를, 함께 합의를 보면 일률적으로 일관되게 같 것 같아요. 어떤 제도든 간에 기준이 죽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변경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본래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유공자·유자녀가 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성년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 말씀 속에는 배우자가 고령화돼서 스스로 생활하기 힘든데 그 점에 대한 것은 어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말씀은 좀 근거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뭔가 변형을 하려면 다른 모든 제도와 일관되게 가야 되니까 그 속에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융통성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아이디어를 한번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 방금 윤주경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히 말씀 들은 게 있지만 지금까지 보훈과 관련해서 계속 논점이 됐던 것 중에서 보훈 가족들이 요구했던 것은 보훈수당과 기초노령연금이든 복지 수당과의 관계에서 복지 수당을 계산할 때 보훈수당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중 수령이 안 된다 이게 제일 큰 숙제 아니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저번에.

○오기형 위원 그랬나요?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포함이 안 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해 가지고요 지금은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됐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큰 숙제로 생각해 갖고……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지난해에 저희들이 잘 해결을 했습니다. 빠지도록 했습니다.

○오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께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이 참전유공자법이 항목이 많고 논의가 길어져서 오늘 다 마무리 의결하기는 좀 어려울 건데 지금 금융위 관계자들이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사를 못 하고 돌려보내야 될 상황이라 일단 보훈처 법은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보류했다가 다음 회의 때 이어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윤한홍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소위원장 김종민 예.

○윤한홍 위원 우리가 사실 상당한 선진국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보훈부가 되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의 사례를 좀 정리를 해 갖고 우리한테 주세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것 종합 정리를 해 가지고 주세요.

○윤한홍 위원 미국이라든지 선진국들 있잖아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어떻게 예우를 하고 있는지, 가족은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 정리 좀 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종민 기준과 수준.

○국가보훈처차장 윤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오늘 의사일정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종진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을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 한 10분 정회하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위원님들 잠깐 회의 준비하시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종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대기를 해 주셨고,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예.

○이용우 위원 법안 심의할 때 부위원장이 출석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소위원장 김종민 오늘 회의에 원래 김소영 부위원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아시아 국외 출장이 잡혀 있어서 이세훈 사무처장이 출석을 하셨는데…… 국외 출장이 미리 예정돼 있는 겁니까? 언제 예정됐지요, 그게?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이세훈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달 전부터 계획을 했었고요.

○소위원장 김종민 상대 국가와 어떤 공식적인 일정이 잡혀져 있는 건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이세훈 지금 우즈베키스탄하고 키르기스스탄 두 국가를 가는데요. 이쪽에 저희 금융 인프라 수출건이 있어서 그 부분 협력차 국외 출장……

○윤한홍 위원 무슨 수출이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이세훈 지급결제제도 관련해서 저희 금융 인프라를 해당국에 수출하는 내용입니다.

○이용우 위원 아니,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위 사안이 아니잖아요, 금융결제원, 한국은행 산하인데 왜 금융위 부위원장이 가는 거예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이세훈 여기 신용카드 인프라여서……

○소위원장 김종민 핀테크 MOU?

○이용우 위원 핀테크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이용우 위원님의 문제 지적을 금융위에서 잘 참고하셔서 법안소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를 잘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정부 측 의견 듣고 위원님들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141)

2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552)

2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4447)

2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9414)

2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9937)

3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534)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5)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

33.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80)

3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0)

3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3)

3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76)

3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1)

3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98)

3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8)

4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3)

4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2)

4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2)

4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66)

4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3)

4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25)

4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9)

4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5)

4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0)

4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0)

5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27)

5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9)

5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8)
5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1)
5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48)
5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78)
5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1)
5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2)
5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641)
5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860)
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021)
6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439)
6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564)
6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674)
6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734)
6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817)
6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366)
6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424)
6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160)
6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910)
7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1)
7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8)

(16시23분)

○소위원장 김종민 먼저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71항까지 이상 4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6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소위자료 1쪽의 심사 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에 법안소위가 있었고요. 그때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해서 도입하기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수탁기관에 관련해서 심평원으로 할지 아니면 대령으로 정하는 다른 기관으로 할지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어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이세훈 정부 측에서는 보험업계나 의료계의 의견 이것을 두루 고려해서 법률에서는 지금 규정된 대로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주시면, 저희가 대통령령 만들면서 의료업계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보험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김성주 위원 제가 몇 가지 확인을 좀 할게요.

현재 우리나라 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있고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료보험, 그러니까 실손이라든가 정액보험에 의해서 이차적인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출발은 어쨌든 간에 국민 또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거지요. 현재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아서 이것을 보험사로 보내는 것이 불편하니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보내면 훨씬 더 편리할 것이다, 그리고 소위 미청구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게 발의 목적인 거지요.

다만 그 과정에서 직접 전송이 어려우니 누군가 중계기관을 거쳐야 된다. 중계서버, 시스템 뭐 이런 게 있겠지요. 그래서 그 중계기관을 이 법에 원하는 국가기관인 심평원으로, 유사한 업무를

이미 하고 있는 심평원으로 할 경우에 새로운 시스템 개발비도 들어가지 않고 기존의 사용법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제안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의사단체가 ‘우리는 심평원을 경유하는 걸 반대한다’ 이래서 이게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대안으로 그러면 보험사가 설립한 보험개발원을 거치는 걸로 하면 그러면 의사단체가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안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시작 과정인데, 그런데 제가 직접 의사협회한테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보험개발원을 경유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느냐’라고 지난번 회의 때 얘기했는데 의사협회 측은 ‘우리는 동의한 적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대안으로 중계기관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이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는 거라고 하면 자기들은 반대하지 않겠다, 다만 최소 정보에 국한해야 된다, 이게 의사협회가 저희한테 보내온 문서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심평원은 절대 안 돼, 보험개발원으로는 익스큐즈했어’라고 하는 것이 법안 심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안으로 대두됐던 건데 그 반대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내용이 뭔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서 제가 대단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가 정확하게 의사단체하고 어떤 논의를 했는지, 그들은 어디까지는 수용하고 여전히 어떤 게 반대 입장인지를 명확히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것 얘기하실 때 지금 김성주 위원이 얘기하신 병원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이세훈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의료업계 또 보험업계 다 실무적으로 이해관계자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동안 이 부분을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심평원을 경유하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는 가장 좋을 수 있겠지만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보험개발원을 생각을 했던 거고.

의료계에서 공식적으로 어느 부분을 찬성한다 이렇게 공식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면

서 저희는 그쪽에 참여한 의료계가 의료계의 다수 의사를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 왔고 그 협의체에서 의료업계가 얘기한 부분은 심평원은 어렵지만 보험개발원 정도까지는 양해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김성주 위원 참여한 의사단체 구성이 누구인지를 알려 줄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이세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측 대표가 참석했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누구, 무슨 총무이사, 법제이사 있을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입니다.

의사협회의 경우에 보험이사가 공식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간에 회의는 십여 차례 있었습니

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4월 25일 날 법안소위가 있었고 그후에 언론보도가 있었고 며칠 지나서 속기록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해당 속기록은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의료업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상황에 대해서 의료업계도 다 주지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의료업계에서 명시적으로 심평원이어야 한다, 혹은 보험개발원은 절대 안 된다, 혹은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4월 25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안 중심으로 통과가 되는 것이라고 의료업계 전반에 걸쳐서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저 한마디만 할게요.

○소위원장 김종민 예,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통합의견에 따르면 공공성·보안성·전문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 여기는 심평원도 포함될 수 있고 보험개발원일 수도 있고 어떤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관 협회, 의사협회나 병원협회에서 심평원은 절대 안 되겠다, 그다음에 보험개발원도 안 되겠다, 뭐도 안 되겠다, 뭐도 안 되겠다 하면 이 법에 의해서 그 요건을 갖춘 걸 금융위에서 지정해 버리면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보험개발원이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요건을 갖춘 전문대행기관이 어떤 요건인지 심사하고, 심사를 했는데 ‘우리는 심평원은 못 믿겠으니 안 하겠습니다’ 그러

면 다른 데 대안 대안 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면 이 법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절차를 가져가는 것이지. 이게 보험개발원에 준다 어디에 준다 이렇게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속기록 같은 데서 그런 조건들과 절차들을 금융위가 밝아서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 하면서 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윤한홍 위원님.

○윤한홍 위원 지난번 우리 소위에서 정말 많은 위원님들 말씀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법안도 보면 어떤 의원님은 심평원으로 중계를 해놓은 분도 있고, 그런데 전채수 의원님하고 김병욱 의원님은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중계기관이라고 하신 이유가 아마 이게 너무나 많은 국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거거든요. 너무나 많은 국민들에게 편익을 주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켜서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하자 그런 뜻으로 아마 이렇게 법안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잘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용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국민들이 실손보험료 혜택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못 찾는 보험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이세훈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어지면서 우리 정부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 심평원이나 보험개발원이나 결정된 건 하나도 없지만 보험회사에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험료가 7000억이나 있는데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국민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자기들도 어떤 보험회사는 안 하는 게 더 낫고 어떤 보험회사는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 인력과 종이 이런 게 낭비되니까 이걸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을 지금은 손해를 본다고 올렸는데 이것은 미끼 상품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오만 이야기가 다 있어요. 이게 불신에서 발달되는 건데 금융위원회에 실손보험이나 이런 것에 대한 체크를 잘하셔서, 실손보험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

이.

그래서 나중에 과잉되는 진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백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잖아요. 그런 게 됐을 때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나아지는지 이런 걸 국민들한테 해 줘야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불신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법이 나온 지도 오래됐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저도 청구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안 하고 이러니까 이런 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선 시약을 해 놓고 만약에 보험회사 이익에 늘어난다 하면 이걸 오히려 심평원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김한규 위원님 답변하시면서 첨가해서, 지금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단계적으로, 김성주 위원님은 계속 공·사보험 통합 전망에 의해서 심평원으로 연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보험개발원에서 심평원으로 넘어가는 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는지 그걸 추가해서 한번 이따 답변을 같이 해 주세요.

○김한규 위원 저는 실손보험 자주 청구하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다른 목적, 건강보험하고의 장기적인 통합, 그러니까 과다한 사보험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비급여 항목을 줄여 나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험업법의 논의라기보다는 보건의복지위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논의해야 될 영역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 자체에서 꼭 전송대행기관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꼭 그래야 될 거라는 생각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과잉진료 이슈들이 있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질병으로 과다한 진료를 받는 것들을 중복 체크하고 투약도 동일 항목 동일 효과를 내는 의료처방전이 있으면 그것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금융기관의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송대행기관을 통해서 혹시라도 보험 자료가 취합이 된다면 이건 보험회사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보험회사들이 혹시 이중 청구한다든지 기타 자
기네들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목적으
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 자체에
서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전송대행기관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바로 그다음 요
청은 그런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과도한 보험금
청구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전송대행기관 항목을
아예 빼고 통합의견 내신 102조의7에 보면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인데 이것도 ‘해
야 된다’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산시스템’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된다’라고 해서 보험회사에게 시
스템 구축 의무를 주고 요양기관에서 바로 그 시
스템을 통해서 보험회사한테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답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이세훈 먼저 직접 전송하
는 방법 이게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
니다마는 예를 들면 보험회사하고 각 요양기관하
고 다 네트워킹 방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험회사가 n개가 있고 요양기관이 m개
가 있다 그러면 $n \times m$ 개만큼 네트워킹이 돼야 됩
니다. 반면에 중계기관이 가운데 낀다 그러면 네
트워킹 수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기술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닌데 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 때문에 저
희가 중계……

○소위원장 김종민 비용은 누가 냅니까?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이세훈 보험회사가 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런데 대략 많이 든다고 하는
게 예측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로 보험회사한테
더 부담, 그러니까 결국 저희는 이해관계를 조정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들이 계산 거잖아요. 일부 의료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의 불만이나 반
대를 통제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
떤 일정한 비용 부담을 더 감수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파악이 돼야, 10배
20배다라고 하면 진짜 고민을, 중계기관의 필요
성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더 많이 든
다라는 것은 좀 너무 추상적이어서요.

○윤창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번 기관이 보험
회사 A, B, C, D, E, F를 못 써요.

○김한규 위원 저도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저도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계
산해 봤냐는 거지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디테일한 결
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의료기관 수가 9만 8000개입니다. 실손보
험 청구를 하는 보험회사가 20여 개입니다. 그러
면 이걸 연결을 하려면 아까 처장이 얘기한 것처
럼 10만 개 곱하기 20개의 노드가 필요합니다.
그게 중계기관이 되게 되면 10만 개와 곱하기가
아니라 단순히 큰 절로만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실무적으로도 TF회의를
하면서 추산을 해 봤습니다. 중계기관이 있을 경
우에는, 유사한 이런 중계역할을 자동차보험의
경우에 보험개발원이 하고 있는데 대략 한 육십
억에서 칠십억 그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보험회
사와 전체를 연결하게 되면 그게 수백억이 훨씬
넘을 거다.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초기에서부터 이 실무협
의체 내에서는 중계기관 혹은 전송대행기관이 필
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데 쉽게 합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박재호 위원님께서 그
리고 김한규 위원님께서도 보험회사가 이걸 악용
할 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실손 청구화의 요체는 뭐냐하면 지금도 서
류에 의해서 개인의 치료 정보가 보험회사에 가
는 겁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안 가던 정보가 새
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가는 방법이 편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오용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법의 요체는 법을 보시면 아시지만 정보 주체
가 요청할 경우에 병원이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여러 염려가 있다면 정보 주체가 이 요청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서류를 뽑
아 가지고 직접 보험회사에 가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손 청구 간소화의 요체는 실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전산적으로 쉽게 요청하면 자료가 전달되
게 해서 낙전 보험금도 줄이고 보험회사의 서류
보관 비용도 줄여서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 볼

게요.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법안을 왜 발의했는가, 발의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 일단은 국민들의 청구 편의를 도모하자고 시작했겠지요. 법안 발의자는 그 하는 과정의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미 기운용되고 있는 심평원을 중계한다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게 문제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대가 생겼어요. 중계를 통해서 뭔가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들여다 보고 싶어 하는 그 의도에 대한 반대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되는 반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게 있고요. 또 시민단체가 반대해요. 그런데 시민단체 반대 시각은 전혀 달라요. 시민단체는 이런 걸 중계했을 경우에 아주 민감한 개인 정보인 의료 관련된 데이터가 민간에게 축적될 수 있다, 특히 보험사들에게. 이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사단체의 주장하고 묘하게 닿는 거지요. 그런데 의도는 전혀 다릅니다.

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구축됐을 때 그 비용을 결국은 보험료 인상 등으로 국민들한테 전가하지 않을까 이런 이유로 또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것도 환자단체의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환자 단체에서 이런 주장을 해요. 지금도 민간보험사들이 고액의 암치료 관련된 청구를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한데 작은 소액에 대한 청구는 편리하게 해서 그걸로 자신들의 영업과 보험의 유지는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은 매출과 이익을 올리고 정작 꼭 필요한 필수적인 보험이 해야 될 위험의 분산 기능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이런 행태가 더 강화될 거라는 이유로 환자단체는 반대해요.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중계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의 논쟁이었지만 핵심은 중계기관을 두는 것이 데이터의 축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축적에 대한 반대를 의사단체와 시민단체가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법안 시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려면 오히려 중계기관에 대한 관심이 핵심이었던 것에서 중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도 최근에 청구를 했었습니다만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서류를 제가 카톡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송에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한 게 없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팩스나 이런 걸로 문서 전달된 게 아니니까 그쪽 보험사에도 특별하게 엄청난 서류가 쌓이니까 ‘이게 보관에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하고도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만 지금은 그 개인이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면 양쪽의 반대가 해소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즉 데이터 축적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반대가 해소된다고 하면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고 반대도 해소할 수 있으니까 더 쉽게 이 법이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금융위 의견을 주세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이세훈 저희가 총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도를 바꿨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하시는 사안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일부분 일탈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되는 측면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보완 장치로 통제를 해 가면서 우선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게 현시점에서……

○김성주 위원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작용 어떤 식으로 막아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이세훈 그런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데이터 축적 이 부분은 아까 저희 산업국장이 말씀드렸드시피 현재도 마음만 먹으면 종이 서류를 가지고 데이터 축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도 자체는 단지 종이를 건네는 걸 전자적으로 바꾼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우려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주 위원 그게 축적의 문제가 아니라 활용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활용의 문제.

○윤창현 위원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카톡으로 보낸 문서가 인쇄가 돼 가지고 쌓여 있습니다, 보험사 창고에. 제가 국감 때 한번 사진을 보여 드렸는데 어마어마한 창고에 꽂 차 있어요, 인쇄한 데이터가. 지금도 그 민감한 정보가

보험회사에 가 가지고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계기관이 안 건드리게 만들어 놓은 이 부분에서 자꾸 데이터가 축적된다고 얘기하시는 건 중계기관이 건드린다고 가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중계기관이 안 건드립니다, 이 법에서.

○소위원장 김종민 윤한홍 위원님.

○윤한홍 위원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보면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고 방법론으로 자꾸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좋은 사람 누구예요? 보험회사만 좋은 것 아닙니까. 불편한 건 국민입니다.

그러면 빨리해 가지고 적절한 방법, 중계기관을 하든 직접 하든 빨리해 가지고 해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다르게 수정하더라도 빨리합시다. 방법을 가지고 자꾸 이러면 결국 보험회사, 잠자는 돈 챙겨 먹고 국민들 불편한데 그 방법이, 꼬리를 갖고 몸통을 흔들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이야기예요.

○이용우 위원 제가 한마디만 좀……

○소위원장 김종민 예.

○이용우 위원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말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중에 금융결제원이라고 하는 지급결제의 중계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집적이 되지요.

그런데 금융결제원을 누가 어떻게 거버넌스를 하고 어떻게 통제를 하고 그 데이터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제가 왜 금융결제원 얘기를 하느냐 하면 EU가 통화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은행과 은행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API로 하면서 M:N 각각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들어서 아직도 통화 통합의 지급결제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계기관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김성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중계기관을 악용하거나 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제가 시행령안 자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요건들을 만드는 그걸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계기관이 악용되지 않는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걸 같이 고민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하고 그걸 우리 정무위에 보고하면서 시행을 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는 게, 첫 단추를 그렇게 키

우자는 뜻이고. 이게 실제로 심평원이 될 수도 있고 보험개발원이 아니고 또 다른 기관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하는 거고 협의가 안 되고 모든 것 다 싫다고 하면 그것에서 유일하게 남는 건 이것밖에 없지 않냐 하면서 심평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첫 단추를 놓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통합 의견에 대한 대안이 마땅해 보이고 오늘 우리가 이 논의를 속 기록에 남겼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하고 악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된 상황이면 이 정도에서 논의를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을 법안 취지에 담아서 의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김성주 위원님.

○김성주 위원 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이고요. 전달하는 이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는 주로 중계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어 왔다면 중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법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를 통한 중계 방식도 있지만 직접 피어 투 피어(peer to peer)하는 방식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NS,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서비스가 서버를 거치긴 하지만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방식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뢰가 높은 것처럼 그런 방식도 같이 고려해서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하면 이 논쟁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계기관을 어떤 것 할 거냐만 논쟁이 됐고 그것만 다시 또 시행령에 위임하겠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또 논의가 그걸 법에 담지 왜 임의적으로 정부가 지정했나 하니 어쨌든 간에 중계 방식은 중계기관을 거치든 아니면 직접 하든 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공성, 보안성, 편리성 등이 있겠지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도록 한다면 저는 서로 내용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것을 그러면 법안을 좀 수정을 해서 중계 방식은 직접 연결이든 중계기관을 통한 방식이든 포괄적으로 열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서 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문구를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이용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말씀에서 카톡을 통해서 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했을 때, 카톡에서 그 정보를 활용하는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텔레그램에서 하는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시행령에서 주는 것은 중계기관이 카카오가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공공성, 보안성 이런 것들을 갖추는 걸 심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악용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이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직접 전송이라고 하지만 그것 자체도 직접이지 아닙니다. 직접은 저와 바로 정보가 오가는 게 직접이지 어느 서버를 거치면 직접이지 아니고 서버에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상당히 전산시스템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한 겁니다.

○김성주 위원 그 얘기하면 내가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팩스로 전송하는 것도, 이미지도 도청이 가능합니다, 도·감청이. 이미지 파일로 보낸 것도 지금 현재의 소프트웨어 기술은 텍스트로 다 전환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축적해서 DB화할 수 있어요. 그게 현재 기술이거든요. 다만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것이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쌍방이 하는 거잖아요, 다른 관점에서.

그렇다고 하면 중계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법에 정해서, 시행령에 위탁하지 말고 그 전송 방식에까지도 포괄적으로 담아서 하는 것이 이후 이것에 대한 찬반 관계자들 또는 국회의 감시와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 굳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사무처장님이 지금 김성주 의원안에 대한 의견 좀 얘기해 보세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이세훈 저희가 중계기관을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협의한 의견들 이런 걸 종합해서 말씀드린 건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굳이 선택 폭을 좁힐 이유는 없으니까 중계기관에 위탁하든지 아니면 직접 전송하든지 여러 가지 길을 열어 두고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가 1년간 의료계나 또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구에 관한 얘기인데요.

4페이지에 보면 통합 의견에 102조의7에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된다고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2항으로 가서 이게 위탁할 수 있다 가는 거니까 1항 자체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만 그걸 직접 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다고 2항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김한규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지금 논의된 조문을 저희 의견을 개진을 하면요.

4쪽에 있는 102조의7 제1항은 김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요. 5쪽에 2항이 지금 쪽 되면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 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위탁하거나 직접 할 수 있다……

○김한규 위원 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논의되신 것대로 그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지금 있는 조항을 반영해서 대안으로 의결을 한번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6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창현 위원 저기 하나만 좀.

○소위원장 김종민 예.

○윤창현 위원 여기 부대의견을 좀 가져왔는데요.

‘보험·의료계 소비자단체 논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한다’ ‘영리행위를 하는 회사 법인보다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중계기관으로 정한다’, 혹시 중계기관으로 가게 되면, 그다음에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도입방안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한다’ 이것까지만 좀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것은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왜 보험업계의 입장을 부대의견에 담습니까?

○윤창현 위원 3번이 좀 애매한가요?

○소위원장 김종민 3번이 뭐예요?

○윤창현 위원 3번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이건 뭐……

○**김성주 위원** 3번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의 주장을 반영한 것을 부대의견에 넣는다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은 아니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런데 3번이 보험업계 의견인 이유가 뭐지요?

○**윤창현 위원** 소비자단체에서 가져온 거예요.

○**소위원장 김종민** 소비자단체 의견 같은데.

○**김성주 위원** 소비자단체든 보험업계든지 그것은 국가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지 그걸 부대의견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윤창현 위원** 소비자단체 의견이에요. 소비자와 학계라고 하는 소비자단체에서 가져온 거니까, 의원과 약국은 2년 정도 주는 건 어때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의원, 약국은 사실은 저희가 부칙에 대한 논의가 별로 진행이 없었지만요. 상급병원 중 대형 병원은 1년 내에 시행하게 되어 있고요. 의원은 2년인데 약국도 2년에 준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도 2년 내에 시행한다 이렇게 의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창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하세요.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EMR 얘기하는 거지요?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예.

○**윤창현 위원** EMR에 대해서는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아마 이 부분을 원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지금 부대의견 중에 빠지면 무슨 큰일 날 만한 내용이 있나요?

○**김한규 위원** 다음에 논의하지지요.

○**소위원장 김종민** 지금 이게 논의가 너무 오래 됐는데 막판에 이것 부대의견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의사일정 제 25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6건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번 할게요.

○**소위원장 김종민** 예.

○**박재호 위원** 여기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은 지가 한 3년이 됐는데 금융위원회하고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다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 제정법이라서 양도 많고 이랬는데 다음에 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우리 전문위원님 딱 해 갖고 또 금융위원회 해서 위원들한테 미리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회의 때는 1번으로.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법 이것 다음에 논의하는 걸로 하시고. 자본시장, BDC법 이것도 이용우 위원님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됐습니까, 금융위하고?

○**이용우 위원** 아니요.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이것도 의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의결이 가능한 안건이 있습니까, 지금?

○**이용우 위원** 31번은 사실 지난번에 SG에서 대주주가 매각하는 것에 관련된 안이었고 작년에 국정과제로 해서 논란이 있었던 그 법안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일단은요 지금 여기 법안 중에 의결이, 그렇게 크게 이견이 없어서 오늘 의결 절차가 길지 않을 만한 법안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31번이 지금 금융위에서 수정의견을 낸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용우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수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31번.

또 그다음에 몇 번?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그다음에 52번이 위헌결정 난 것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52번.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예.

○**소위원장 김종민** 53번.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아니요, 53, 54는 다른 얘기고요.

○**소위원장 김종민** 52번.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예, 52번.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31번, 52번 두 법안만 처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사일정 제3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법률안 주요 내용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자료 1쪽입니다.

이용우 의원안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3개월 기간 내에 보유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매도하는 경우에는 대량매도신고서를 증선위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상장회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주식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고려사항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였고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보시면 원안하고 금융위원회 수정의견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금융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금융위 의견 얘기해 주세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이윤수 자본시장국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안 대비 수정 내용인데요.

보고의무자는 주요주주 외에도 임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미공개 정보 접근성이 높고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보고대상은 매도뿐만 아니라 매수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예외에 대해서도 지금은 비율 부분만 있는데요. 50억 금액 부분도 넣어 가지고 대규모 상장사가 과도하게 제외되는 부분을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대상증권은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으로의 전환가능성을 고려한 증권도 포함을 했고요.

보고시점은 최대 3개월 내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부분은 저희도 찬성하고요. 다만 시행령에서는 한 30일 정도로 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예외 사유도 몇 가지 넣어야 될 텐데요. 외부 요인에 따른 지분 변동이 있는 상속, 주

식배당 부분하고요. 다음에 연기금 지분매매와 같이 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또 M&A처럼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렵고 사후공시로 규율가능한 부분은 보고예외로 넣는 부분을 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의 부분은요 사전공시이다 보니까 테크니컬하게 규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첩 거래계획 보고를 금지한다든지 거래계획 이행 의무를 둔다든지 또 거래계획이 사전공시의 특성상 완전히 동일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력적 이행을 주는 부분 그다음에 거래계획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재 부분은 형벌뿐만 아니라 과징금도 넣어서 조금 더, 형벌까지는 이르지 않는 부분도 규율하도록 수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이용우 위원 제가 발의했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저는 금융위원회의 수정의견에 대부분 동의하는데요.

한 두 가지 점에서, 보고시점 30일 전으로 돼 있는데요. 미국도 30일 전이었다가 최근 4월 1일부터 90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일에서 90일 사이에 시행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30일에서 90일 사이에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게 글로벌한 그것에 맞추는 탄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수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사전매도의 경우에 금지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공매도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매도를 하면서 공매도를 할 경우에 있어서 가지고는 주가조작이나 여러 가지 사태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반영하는 그 조항을 삽입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의견 얘기해 주세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이세훈 먼저 보고시점 관련해서는 위원님 제시한 대로 가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공매도 관련해서는 공매도 금지가 사실은 금융시장의 영향을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 억제를 위해서 공매도 금지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공매도 금지나 이런 것들은 시장 상황이라든가 객관적 지표에 따라서 발동 요건이 정해지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특정인의 매도·매수 의사결정에 따라서 공매도 금지가 발동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공매도 관련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유상증자 공시가 있었을 때는 공매도가 일시 중지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그걸 원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매각을 공시했을 경우에 있어 가지고 그 유관자가 공매도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창현 위원 대주주가 공매도를 한다 그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 전에 공매도를 공시하는 것은 일단은 뭐……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이윤수 말씀하신 게 주요주주나 임원들의 공매도를 금지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지금도 거래계획을 내면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매도도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공시하는 거지 금지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이윤수 예, 공시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용우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유상증자를 하고요 공시를 하면서 대주주한테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때려 버리고 그다음에 신주인수권부를 받고 그걸로 주식을 청약을 하고 나중에 갖고 하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CB 같은 형태를 통해서. 그런 행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시 공매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자 매도 공시가 났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윤창현 위원 대주주가 빌려줄 때도 공시를 해야 돼요? 공매도용으로 주식을 빌려줄 때도, 대차거래 할 때도?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장 김광일 공정시장과장입니다.

법안 비교표에 보시면 저희가 매매 이외에 그 밖의 거래라고, 그 밖의 거래에 지금 말씀하신 대차거래나 증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그것까지 다 공시를 해라 한다 이거지요?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장 김광일 예, 그렇습니다.

○윤창현 위원 그러면 뭐 된 것 같아요. 김익래 법인가요, 그러면?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이세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우려 사항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제도는 지금 처음 도입하는 제도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 수준을 너무 강하게 하는 데 따른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저희가 별도의 또 불공정거래 제어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안으로 시행을 해 보고 혹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진짜 우려가 된다고 그러면 보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용우 위원 30일, 90일……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이윤수 예.

○소위원장 김종민 잠깐만요.

연기금 투자 제한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이용우 위원 제외.

○소위원장 김종민 제외?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이윤수 예, 그것은 시행령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지금 이 의사일정 제31항은 의결을 할까요? 더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52항이 급한 법은 아니지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그렇기는 한데 정비하는 거여서 바로 보고드리고 의결 가능하십니다. 1분만……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법률안 주요 내용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이것도 금융 6번 자료 1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 2022년 2월에 법 4조 1항 중에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과 관련 별칙에 대해서 현재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해서 이미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돼 있지만 정비가 되지 않아서 지난번에 원내대표 간의 합의 사항으로 정비를 촉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결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이세훈 이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유보적인 부분은 현재 결정의 취지가 이 조항 자체를 전부 무효화하기 보다는 법익 침해의 비례성을 고려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 사유가 있는 몇 가지 조항들은 여기다 살려 두는 게 어떨까 그런 고려인데요, 좀 여유를 주시면 저희가 문구를 수석전문위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답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종민 그러면 다음 회의까지 수석전문위원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대안을 정리해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가보훈처

차	장	윤	종	진
기획조정실장		이	남	일
보상정책국장		오	진	영
보훈선양국장		장	정	교
보훈예우국장		남	궁	선
복지증진국장		박	봉	용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	세	훈
기획조정관	김	동	환
금융소비자국장	유	재	훈
금융산업국장	신	진	창
자본시장국장	이	윤	수
구조개선정책관	전	요	섭
금융혁신기획단장	박	민	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	병	철
감독총괄국장	이	창	운
예금보험공사부사장	윤	차	용
기획재정부평가분석과장	하	승	완

○출석 위원(13인)

강민국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김희곤	박용진	박재호	오기형
유의동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이용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전문위원	권태현